

# 기 상 법 령 집

2014. 1.

기 상 청



# 차 례

I. 기상법 .....	5
II. 기상관측표준화법 .....	51
III. 기상산업진흥법 .....	85
IV.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	119
V.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129
VI. 기상청 고시 .....	173
1.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	175
2.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	177
3.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	187
4.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	189
5.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	191
6.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	193
7.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	195
8.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	197
9.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	203
10.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	207
11.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 .....	211
12.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213
1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	215
14.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	221
15.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	227



# I . 기 상 법



# 목 차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p> <p><b>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b>제3장 관측</b></p> <p>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p> <p><b>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b></p> <p>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p>	<p>제1조(목적)</p>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경미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제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p>	<p>제1조(목적)</p> <p>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예보 및 특보</b></p> <p>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p> <p>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기후</b></p> <p>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지진 및 지진해일</b></p> <p>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p>	<p>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제9조(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p> <p>제1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p>	<p>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p> <p>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3(협의회의 기능) 제7조의4(협의회의 운영)</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p> <p>제28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29조(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제30조(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삭제 &lt;2009.6.9&gt;</b></p> <p>제31조 삭제 &lt;2009.6.9&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b></p> <p>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b></p> <p>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35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3(지원액의 환수)</p>	<p>제1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p> <p>제17조(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p> <p>제18조 삭제 &lt;2009.12.7&gt;</p> <p>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p> <p>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p>	<p>제8조(자연지진·화산현상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제9조(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대상 등) 제10조(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등)</p> <p>제11조 삭제 &lt;2009.12.10&gt; 제12조 삭제 &lt;2009.12.10&gt; 제13조 삭제 &lt;2009.12.10&gt;</p> <p>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p> <p>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1장 보칙</b></p> <p>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제40조(청문)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42조(손실보상)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2장 벌칙</b></p> <p>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p>	<p>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p> <p>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p> <p>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p> <p>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제17조의2(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p> <p>제18조(증표의 서식)</p> <p>제19조 삭제 &lt;2009.1.8&gt;</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법</b></p> <p>제 정 1961. 8. 25 법률 제 700호  일부개정 1962. 7. 14 법률 제 1105호  일부개정 1967. 3. 30 법률 제 1951호  타법개정 1981. 12. 31 법률 제 3518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1982. 12. 27 법률 제 3583호  타법개정 1990. 12. 27 법률 제 4268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 5232호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 5594호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 6527호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 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 7804호  타법개정 2007. 1. 3 법률 제 8221호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12. 31 법률 제 9309호  타법개정 2009. 6. 9 법률 제 9771호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011. 3. 9 법률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9. 30 법률 제11067호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713호  (과학기술기초법)  일부개정 2013. 7. 16 법률 제11905호</p>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법 시행령</b></p> <p>제 정 1962. 1. 6 각 령 제 355호  일부개정 1962. 8. 6 각 령 제 918호  전부개정 1969. 10. 21 대통령령 제 4168호  전부개정 1983. 6. 18 대통령령 제11152호  일부개정 1990. 5. 18 대통령령 제13007호  타법개정 1990. 12. 27 대통령령 제13188호  (기상청직제)  타법개정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타법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타법개정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91호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7. 6. 26 대통령령 제15415호  타법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9. 4. 3 대통령령 제16223호  일부개정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1호  타법개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일부개정 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6호  타법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타법개정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0호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3호  전부개정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55호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7호  타법개정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7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0호  타법개정 2009. 9. 9 대통령령 제21719호</p>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법 시행규칙</b></p> <p>제 정 1962. 2. 13 문교부령 제 96호  일부개정 1965. 11. 1 교통부령 제210호  전부개정 1969. 8. 5 총리령 제 78호  일부개정 1971. 10. 11 총리령 제103호  일부개정 1975. 6. 25 총리령 제152호  일부개정 1979. 11. 30 총리령 제227호  일부개정 1981. 4. 10 총리령 제246호  전부개정 1983. 9. 19 총리령 제280호  일부개정 1989. 1. 18 총리령 제347호  일부개정 1993. 12. 1 총리령 제441호  전부개정 1997. 7. 21 총리령 제648호  일부개정 1999. 4. 3 과학기술부령 제 6호  일부개정 2000. 8. 21 과학기술부령 제 21호  일부개정 2002. 12. 23 과학기술부령 제 42호  일부개정 2005. 11. 3 과학기술부령 제 75호  전부개정 2006. 6. 30 과학기술부령 제 86호  타법개정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5. 23 환경부령 제286호  일부개정 2009. 1. 8 환경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09. 7. 10 환경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09. 12. 10 환경부령 제353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5. 28 환경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2. 4. 18 환경부령 제451호  일부개정 2014. 1. 14 환경부령 제538호</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 &lt;개정 2008.12.31&gt;</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1.9.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氣象)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li> <li>2. “지상”(地象)이란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li> <li>2의2. “지진”(地震)이란 지구 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 인공적 원인에 의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li> <li>3.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3의2.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해저에서 지진·화산 등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파(長波)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항공법 시행령)</p> <p>타법개정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p> <p>일부개정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39호 일부개정 2012. 3. 30 대통령령 제23701호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p> <p>일부개정 2014. 1. 7 대통령령 제25068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9. 7.7&gt;</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9.7.10&gt;</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p> <p>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p> <p>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p> <p>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p> <p>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다. 지진해일의 예측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p> <p>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p> <p>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p> <p>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p> <p>12. 삭제 &lt;2009.6.9&gt;</p> <p>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②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li> <li>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b>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3.23&gt;</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li> <li>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li> <li>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li> </ol>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7&gt;</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p> <p>제3조(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09.7.7,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li> <li>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p> <p>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p> <p>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관측 &lt;개정 2008.12.31&gt;</b></p> <p>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9.30&gt;</p> <p>[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9.30]</p> <p>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lt;개정 2011.9.30&gt;</p> <p>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9.30&gt;</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위성 개발·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li> <li>2. 기상위성 개발·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1.9.30,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li> <li>2.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li> </ol> <p>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1.9.30&gt;</p> <p>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전문인력의 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li> <li>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li> <li>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배포</li> <li>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같은 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lt;개정 2009.7.7, 2009.9.9&gt;</p> <p>제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려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탑승목적</li> <li>2. 탑승자 인적사항</li> <li>3. 탑승기간 및 구간</li> <li>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해당 선박 또는 항</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9.30&gt; [전문개정 2008.12.31]</p> <p><b>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b></p> <p>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b>제5장 예보 및 특보</b></p> <p>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7&gt;</p> <p>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li> <li>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li> <li>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li> <li>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li> </ol>	<p>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li> <li>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li> <li>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lt;개정 2008.6.20, 2009.7.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호우</li> <li>2. 대설</li> <li>3. 폭풍해일</li> <li>4. 지진해일</li> <li>5. 태풍</li> <li>6. 강풍</li> <li>7. 풍랑</li> <li>8. 황사</li> <li>9. 건조</li> <li>10. 한파</li> <li>11. 폭염</li> <li>12. 안개</li> </ol> <p>제9조(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視程)·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lt;개정 2008.6.20, 2008.9.22, 2009.9.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li> <li>2. 비행정보구역(「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li> <li>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li> <li>4. 이륙예보</li> <li>5. 착륙예보</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p>	<p>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lt;개정 2008.6.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풍</li> <li>2. 뇌진(雷電)</li> <li>3. 우박</li> <li>4. 대설</li> <li>5. 강풍</li> <li>6. 저시정(低視程)</li> <li>7. 호우</li> <li>8. 운고(Ceiling)</li> <li>9. 난류</li> <li>10. 착빙(着氷)</li> <li>11. 산악파(山岳波)</li> <li>12. 먼지 또는 모래보라</li> <li>13. 화산재</li> <li>14. 지진해일</li> </ol> <p>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 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li> <li>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li> <li>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li> <li>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li> </ol> <p>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의 예</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 기상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한다. &lt;개정 2011.9.30,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축산식품부</li> <li>2. 국토교통부</li> <li>3. 해양수산부</li> <li>4. 소방방재청</li> <li>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특보 수신에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li> <li>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li> <li>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li> </ol> <p>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과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30]</p> <p>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7.7, 2014.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li> <li>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li> <li>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li> <li>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li> </ol> <p>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08.6.20, 2009.7.7, 2012.3.30, 2013.3.23, 2014.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li> <li>2. 미래창조과학부</li> <li>2의2. 안전행정부</li> <li>2의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li> <li>3.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 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한다)</p> <p>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p>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p> <p>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08.6.20, 2009.7.7, 2014.1.7&gt;</p> <p>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9.6.9, 2011.9.30, 2013.7.16&gt; [전문개정 2008.12.31]</p> <p>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의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관측 결과</li> <li>2. 예보 및 특보</li> <li>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li> </ol>	<p>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4.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4.&gt;</p> <p>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p> <p>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기후 &lt;개정 2008.12.31&gt;</b></p> <p>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7.16&gt;</p> <p>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7.16&gt; [전문개정 2008.12.31]</p>		<p>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감시를 하는 때에는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층권의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및 복사(輻射)에 관한 관측 자료를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지구대기감시 관측 자료를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4&gt;</p> <p>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 관측 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10, 2014.1.14&gt;</p> <p>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lt;개정 2009.7.10, 2014.1.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li> <li>2. 기후가 강수·열파 및 한파 등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li> <li>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목개정 2014.1.14]</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1.17] 제21조의2</p> <p>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이하 "시나리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li> <li>2.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li> <li>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li> </ol>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나리오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li> <li>2.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1.7]</p>	<p>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p> <p>②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③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본조신설 2014.1.14]</p> <p>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lt;개정 2008.5.23, 2009.7.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 기후전망: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2월 하순에 발표</li> <li>2. 봄철 기후전망: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li> <li>3. 여름철 기후전망: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7.16&gt;</p> <p>③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관리, 응용자료의 생산과 통계의 공고 및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7.16&gt;</p> <p>[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4.1.17] 제23조</p> <p>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 ① 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08.12.31&gt;</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lt;개정 2008.12.31&gt;</p>		<p>4. 가을철 기후전망 :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p> <p>5. 겨울철 기후전망 :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p> <p>6. 수시 기후전망 : 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p> <p>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표한다.</p> <p>③ 기후전망의 발표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p>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4&gt;</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4.1.14&gt;</p> <p>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lt;신설 2014.1.14&gt;</p> <p>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로 기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li> <li>2. 기후정책, 기후예측,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산업육성에</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후과학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9.7.10]</p> <p>제7조의3(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기후전망, 미래 기후예측 및 기후변동의 감시, 이상기후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li> <li>3. 기후변화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감시(관측망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li> <li>4. 기상자원 및 기상조절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li> <li>5.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li> </ol> <p>[본조신설 2009.7.10]</p> <p>제7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의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b>제7장 지진 및 지진해일 &lt;신설 2011.9.30&gt;</b></p> <p>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을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자연지진·화</p>	<p>제1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지진관측망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li> <li>2. 국가 지진관측망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li> <li>3. 국가 지진관측망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li> <li>4.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li> <li>5. 국가 지진관측망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측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운영</li> <li>6. 그 밖에 국가 지진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본조신설 2012.3.30]</p> <p>제1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구물리 관측시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li> <li>2. 지구물리 관측시설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li> <li>3. 지구물리 관측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li> <li>4.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개발</li> <li>5. 지구물리 관측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li> <li>6. 그 밖에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본조신설 2012.3.30]</p>	<p>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0]</p> <p>제8조(자연지진·화산현상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발표기준·대상구역, 통보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의 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연지진: 지진통보 및 지진속보</li> </ol> </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발표할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제28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제29조(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화산 및 지진해일 현상에 관한 관측 자료, 지구물리 관측 자료, 그 밖에 지진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제30조(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p>	<p>제17조(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p>	<p>나. 화산현상: 화산통보 다.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p> <p>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나. 화산현상: 화산분화 및 화산재 다.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p> <p>3. 정보의 전달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및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전달 [본조신설 2012.4.18]</p> <p>제9조(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통보대상,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탐지·분석방법: 지진과 및 공중음과 관측 자료의 종합·분석 2. 통보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방법: 제8조제3호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8]</p> <p>제10조(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거나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8]</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삭제 &lt;2009.6.9&gt;</b></p> <p>제31조 삭제 &lt;2009.6.9&gt;</p> <p><b>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b></p> <p>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lt;개정 2011.3.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연구기관</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li> </ol>	<p>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li> <li>2.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설치 및 관측환경의 조사</li> <li>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li> <li>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li> <li>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ol> <p>[본조신설 2012.3.30]</p> <p>제18조 삭제&lt;2009.12.7&gt;</p> <p>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li> <li>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li> <li>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li> <li>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li> </ol>	<p>제11조 삭제 &lt;2009.12.10&gt;</p> <p>제12조 삭제 &lt;2009.12.10&gt;</p> <p>제13조 삭제 &lt;2009.12.10&gt;</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관</p> <p>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p> <p>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진담부서</p> <p>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p> <p>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p> <p>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9.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li> <li>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li> <li>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과제수행목표</li> <li>3. 과제수행능력</li> <li>4. 과제수행 소요비용</li> <li>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li> </ol>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제의 중복성 여부</li> <li>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능력</li> <li>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li> </ol> <p>[본조 신설 2008.6.20]</p> <p>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li> </ol>	<p>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9.7.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li> <li>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lt;개정 2009.7.10&gt;</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4. 인력교류 5. 공동조사·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b></p> <p>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7.16&gt;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원 및 직원 3. 기상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에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7.16&gt;</p>	<p>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p>	<p>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법 제35조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희망하는 사람 등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1.14.]</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④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7.16&gt;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4.1.17] 제35조제4항</p> <p>제35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li> <li>2. 제3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li> <li>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ol> <p>②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li> <li>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ol> <p>[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1.17] 제35조의2</p>		<p>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4.1.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li> <li>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li> <li>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p>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li> <li>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li> <li>3. 시설 및 장비의 개요</li> <li>4. 교육평가방법</li> <li>5. 연간교육계획</li> <li>6. 교육규정</li> </ol> <p>③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5.23, 2014.1.14&gt;</p> <p>제16조의2(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4.]</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35조의3(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훈련기관이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본조신설 2013.7.1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1장 보칙 &lt;개정 2008.12.31&gt;</b></p> <p>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6.9&gt;</p> <p>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6.9&gt;</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10, 2009.12.10&gt;</p> <p>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10&gt;</p> <p>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10&gt;</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lt;개정 2010.5.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li> <li>2. 지방자치단체</li> <li>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li> <li>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li> </ol>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제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1.9.30&gt;</p> <p>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에 대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08.2.29, 2009.7.7, 2012.3.30, 2013.3.23&gt;</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3.30&gt;</p> <p>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2.3.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li> <li>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li> <li>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li> <li>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li> </ol> <p>[제목개정 2009.7.7]</p> <p>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lt;개정 2009.7.7&gt;</p>	<p>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5.23&gt;</p> <p>제17조의2(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면제받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li> <li>2.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li> <li>3. 「항공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li> <li>4.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li> </ol> <p>[본조신설 2012.4.18]</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전문개정 2008.12.31]</p> <p>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p> <p>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42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p>	<p>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p>	<p>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에게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9.6.9&gt; [전문개정 2008.12.31]</p> <p>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p>	<p>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7, 2009.12.7, 2012.3.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 장비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li> <li>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li> <li>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li> <li>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li> <li>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자료제공</li> </ol> <p>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li> <li>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li> <li>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li> <li>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li> <li>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li> <li>6.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 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p> <p>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p> <p>3. 기상측기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또는 조정 등</p> <p>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p> <p>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 [전문개정 2008.12.31]</p> <p>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lt;개정 2009.6.9&gt; [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2장 벌칙 &lt;개정 2008.12.31&gt;</b></p> <p>제48조(벌칙)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li> <li>2. 삭제 &lt;2009.6.9&gt;</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p>	<p>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p> <p>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51조(과태료) ①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법률 제7804호, 2005.12.30&gt;</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3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p> <p>제4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p> <p>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본조신설 2009.7.7]</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대통령령 제19555호, 2006.6.29&gt;</b></p> <p>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19조 삭제 &lt;2009.1.8&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과학기술부령 제86호, 2006.6.30&gt;</b></p> <p>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 &lt;법률 제8221호, 2007.1.3&gt; (선박안전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p> <p>② 내지 ⑧생략</p> <p><b>부 칙 &lt;법률 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125&gt;까지 생략 &lt;126&gt;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gt;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17&gt;까지 생략 &lt;18&gt;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p> <p>&lt;19&gt; 생략</p>	<p><b>부 칙 &lt;환경부령 제281호, 2008.3.3&gt;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p> <p>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p> <p>⑩ 생략</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lt;127&gt;부터 &lt;760&gt;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0847호, 2008.6.20&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g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부터 &lt;26&gt;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473호, 2009.5.6&gt;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환경부령 제286호, 2008.5.23&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환경부령 제319호, 2009.1.8&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법률 제9309호, 2008.12.31&gt;</b></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620호, 2009.7.7&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719호, 2009.9.9&gt; (항공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부터 &lt;17&gt;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37호, 2009.7.10&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법률 제9771호, 2009.6.9&gt; (기상산업진흥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874호, 2009.12.7&gt;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 지원기관</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53호, 2009.12.10&gt;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p> <p><b>부 칙 &lt;법률 제10445호, 2011.3.9&gt;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lt;24&gt;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p> <p><b>부 칙 &lt;법률 제11067호, 2011.9.30&gt;</b></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2739호, 2011.3.29&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3701호, 2012.3.30&gt;</b></p> <p>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 생략</p> <p><b>부칙 &lt;환경부령 제371호, 2010.5.28&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환경부령 제451호, 2012.4.18&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환경부령 제538호, 2014.1.14&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 &lt;법률 제11690호, 2013.3.23&gt; (정부조직법)</b></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516&gt;까지 생략 &lt;517&gt;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lt;518&gt;부터 &lt;710&gt;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gt;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p> <p>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p>	
<p><b>부 칙 &lt;법률 제11713호, 2013.3.23&gt; (과학기술기본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lt;28&gt;까지 생략</p> <p><b>부칙 &lt;법률 제11905호, 2013.7.16&gt;</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gt;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부터 &lt;18&gt;까지 생략</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5068호, 2014.1.7&gt;</b></p> <p>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기상법(법률)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1.3.2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25	50	100

##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2.4.18.> <개정 2014.1.14>

### 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3명 이상

-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기사 또는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다. 기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라.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마.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2. 시설·장비기준

- 가.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나.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별표 2] 삭제 <2010.5.28>

[별표 3] <개정 2010.5.2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7조제5항본문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 기상현상 증명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 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3,0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2) 1MB 이상 ~ 1GB 미만	103,000원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3) 1GB 이상 ~ 1TB 미만	303,000원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4) 1TB 이상	803,000원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1면당 1,000원	
라. 레이더기상자료		
1) 레이더에코자료	1매당 700원	
2)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1매당 1,500원	
마. 위성기상자료		
1) 위성영상 기본자료	1매당 3,000원	
2) 칼라건식사진	1매당 1,400원	

비고

-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 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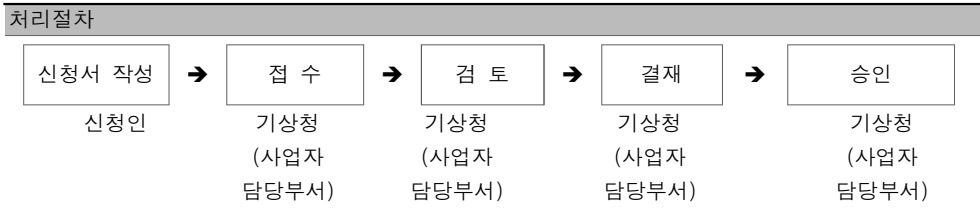
**기상조절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기상조절의 목적		
	기상조절의 행위 주체		
	기상조절의 종류		
	대 상 지 역		
	시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상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조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하

첨부서류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의 방법 수단 및 기상조절로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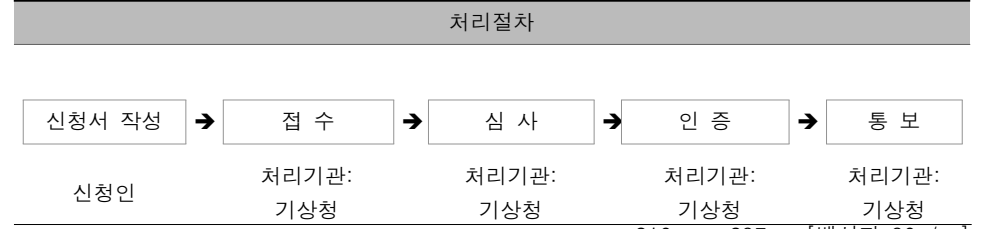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시나리오	① 시나리오명: (전지구 / 동아시아 / 한반도)		② 사용모델:
	③ 배출시나리오:		④ 시간분해능:
	⑤ 공간분해능:		⑥ 재현·전망기간:
	⑦ 산출변수: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시나리오에 대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1.14>

<p><b>제 호</b></p> <p><b>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b></p>	
<p>상호명(기관명):</p> <p>성명(대표자):</p> <p>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p> <p>소재지:</p> <p>인증 시나리오 현황</p>	
<p>① 시나리오명: (전지구 / 동아시아 / 한반도)</p>	<p>② 사용모델:</p>
<p>③ 배출시나리오:</p>	<p>④ 시간분해능:</p>
<p>⑤ 공간분해능:</p>	<p>⑥ 재현·전망기간 :</p>
<p>⑦ 산출변수:</p>	
<p>위 신청인이 제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합니다.</p>	
<p>년 월 일</p> <p><b>기 상 청 장</b>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2px 10px;">직인</span></p>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0.5.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0.5.28>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0.5.28>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4>

###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실태조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 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 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 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14>

### 제 호

###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단체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 교육과정명:
- 지정조건: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m<sup>2</sup>]

■ 기상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4>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기상요소		
	지방		
	기간		
	용도 및 제출처	통수	통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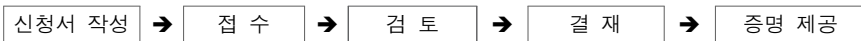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고
기상현상증명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합니다.

**작성요령**

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지방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적습니다.(예: 서울, 부산, 서해중부해상 등)

**처리절차**



신청인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기상증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기상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4>

**기상자료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FAX/E-mail)	
	주소		
신청내용	기상요소		
	지방		
	기간		
	용도	자료종류 및 수량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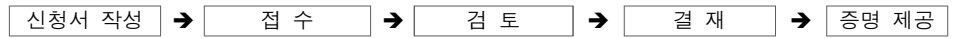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분	처리기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가. 인쇄 및 복사	즉시	1장당 2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전자처리자료	즉시	3,000원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 1KB 이상 ~ 1MB 미만	2일	103,000원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2) 1MB 이상 ~ 1GB 미만	7일	303,000원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3) 1GB 이상 ~ 1TB 미만	15일	803,000원	
4) 1TB 이상	2일	1,000원	
다. 수차업 및 응용처리자료	2일	1장당 700원	
라. 레이더기상자료	2일	1장당 1,500원	
1) 레이더에코자료	2일	1장당 700원	
2)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2일	1장당 1,500원	
마. 위성기상자료	2일	1장당 3,000원	
1) 위성영상 기본자료	2일	1장당 3,000원	
2) 칼라위성사진	2일	1장당 1,400원	

비고: 1.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3 비고 제1호와 같습니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기상증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 기상현상증명서

1. 단 체 명: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성명(대표자): 4. 전화번호:

5. 주소: 6. 기상요소:

7. 지방: 8. 기간:

9. 증명사항:            별첨 장 참조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상 현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위탁받은 자 ( 직인 )

297mm×210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앞 쪽)

제 호

## 공 무 집 행 증

사 진

-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
- 색안경과 모자착용 금지
- 가로 30mm, 세로 40mm

성 명

**기 상 청**

55mm × 85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공 무 집 행 증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기상법」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Ⅱ. 기상 관측 표준화 법



## 목 차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p> <p><b>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b></p> <p>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제7조(관측방법)</p> <p><b>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b></p> <p>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p> <p><b>제4장 기상측기의 검정 등</b></p> <p>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p>	<p>제1조(목적)</p> <p>제2조(적용대상)</p> <p>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대책 추진 등)</p> <p>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p> <p>제6조(기상측기의 검정)</p>	<p>제1조(목적)</p> <p>제2조(기상관측기준) 제3조(기상측기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등)</p> <p>제4조(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p> <p>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p> <p>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제8조(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p> <p>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p> <p>제16조(검정증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b></p> <p>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p> <p>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p> <p>제19조(기상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b></p> <p>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p> <p>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보칙</b></p> <p>제23조(시정 권고)</p> <p>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p> <p>제25조(증표의 제시)</p> <p>제26조(청문)</p> <p>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p> <p>제28조(과태료)</p>	<p>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p> <p>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p> <p>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p> <p>제1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p> <p>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p> <p>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p> <p>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p> <p>제12조(검정설비의 요건)</p> <p>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p> <p>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p> <p>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관측표준화법</b></p> <p>제 정 2005. 12. 30 법률 제 7807호            타법개정 2007. 5. 25 법률 제 8486호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2007. 12. 21 법률 제 885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12. 31 법률 제 9308호            타법개정 2009. 4. 1 법률 제 9590호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011. 9. 16 법률 제110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 &lt;개정 2008.12.31&gt;</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b></p> <p>제 정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56호            타법개정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3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40호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b></p> <p>제 정 2006. 6. 30 과학기술부령 제 87호            일부개정 2007. 6. 29 과학기술부령 제104호            타법개정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12. 24 환경부령 제489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p> <p>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li> <li>2. 지방자치단체</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li> <li>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li> <li>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li> <li>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li> </ol> <p>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li> <li>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li> <li>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제2조(적용대상)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lt;개정 2008.12.24&gt;</p> <p>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8.1.31, 2009.12.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실험·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li> <li>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li> </ol> </li> <li>2. 전투·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li> <li>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해양기상관측</li> <li>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li> <li>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li> </ol>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b></p> <p>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li> <li>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li> <li>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li> <li>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li> <li>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li> </ol> <p>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을</p>	<p>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li> <li>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li> <li>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li> <li>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li> </ol> <p>②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p>	<p>제2조(기상관측기준)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li> <li>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li> <li>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7조(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b></p> <p>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기상관측환경, 국내외의 자료 교환, 관측 기준시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p> <p>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li> <li>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li> <li>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li> <li>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ol> <p>②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4조(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측시설의 설치 목적</li> <li>2. 관측시설의 설치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등)</li> <li>3. 관측시설의 설치 일정</li> <li>4.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li> <li>5. 관측시설의 운영방식</li> <li>6. 관측시설의 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 여부)</li> <li>7. 관측시설에서 관측하는 기상요소</li> <li>8. 관측시설에 설치되는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의 규격</li> </ol> <p>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교체(관측시설에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측시설 교체 목적</li> <li>2. 관측시설 교체 내용</li> <li>3. 관측시설 교체 일정</li> </ol>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및 이용</p> <p>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③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이전(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이전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측시설 이전 목적</li> <li>2. 관측시설 이전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등)</li> <li>3. 관측시설 이전 일정</li> </ol> <p>④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폐지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측시설 폐지 이유</li> <li>2. 관측시설 폐지 일정</li> <li>3. 당해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li> </ol> <p>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은 최적관측시설·우수관측시설·보통관측시설·개선대상관측시설 및 조정대상관측시설로 구분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측시설의 종류·규모 및 수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측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관측기관의 관측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li> <li>나.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li> <li>다.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인지 여부</li> <li>라.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정이 면제된 것인지 여부</li> </ol> </li> <li>2. 관측시설별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 환경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li> <li>3.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가 국·내외 자료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거나 관리되는지 여부 및 공동활용되는지 여부</li> <li>4. 관측시설의 관측기준시각이 관측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li> <li>5. 관측시설의 관리실태 그 밖에 관측시설의 등급부여에 필요한 사항</li> </ol>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⑥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li> <li>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li> <li>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li> </ol> <p>②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기상측기의 검정 등</b></p> <p>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p>	<p>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li> <li>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li> <li>3. 「기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li> </ol> <p>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도계</li> <li>2. 기압계</li> <li>3. 습도계</li> <li>4. 풍향계</li> </ol>	<p>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관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5. 풍속계</p> <p>6. 일조계(日照計)</p> <p>7. 일사계(日射計)</p> <p>8. 강수량계</p> <p>9. 증발계</p> <p>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p>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4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다.</p> <p>② 제9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상측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만료일 5일전까지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제8조(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8.3.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li> <li>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li> </ol> <p>제9조(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p> <p>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7.6.29&gt;</p>
<p>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p>	<p>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인 이상 확보할 것</li> </ol>	<p>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2.24&gt;</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li> <li>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li> <li>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기상측기 검정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체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업무경력</p> <p>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추는 것</p> <p>가.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li> <li>2.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li> <li>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2.12.24&gt;</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검정설비의 요건) 영 제7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의 요건은 별표 6과 같다.</p> <p>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전문개정 2008.12.31]</p> <p><b>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b></p> <p>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1.9.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li> <li>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li> <li>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li> <li>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li> <li>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li> </ol>	<p>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li> <li>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li> </ol>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p> <p>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居所(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li> <li>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li> </ol> <p>④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b></p> <p>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4. 기상측기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li> <li>5. 기상측기의 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를 위한 사항</li> <li>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li> <li>10. 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09.4.1,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통상자원부, 다른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li> <li>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li> </ol>	<p>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li> <li>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li> </ol> <p>제1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p> <p>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p>	<p>시·장소 및 안전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p> <p>2. 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p>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제10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b>제7장 보칙 &lt;개정 2008.12.31&gt;</b></p> <p>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경우</li> <li>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경우</li> <li>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li> </ol> <p>[전문개정 2008.12.31]</p> <p>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li> <li>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조사</li> </ol>	<p>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3.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조사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전문개정 2008.12.31]</p> <p>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28조(과태료) ①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법률 제7807호, 2005.12.30&gt;</b></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법률 제8486호, 2007.5.25&gt; (산업표준화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대통령령 제19556호, 2006.6.29&gt;</b></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이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과학기술부령 제87호, 2006.6.30&gt;</b></p> <p>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p> <p>⑥부터 &lt;22&gt;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b>부 칙 &lt;법률 제8733호, 2007.12.21&g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p> <p>⑦부터 &lt;30&gt;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0593호, 2008.1.31&gt; (항로표지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 생략</p>	<p><b>부 칙 &lt;과학기술부령 제104호, 2007.6.29&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b>부 칙 &lt;법률 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124&gt;까지 생략 &lt;125&gt;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lt;126&gt;부터 &lt;760&gt;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b>부칙 &lt;법률 제9308호, 2008.12.31&gt;</b></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법률 제9590호, 2009.4.1&gt; (국가표준기본법)</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gt;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18&gt;까지 생략 &lt;19&gt;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1185호, 2008.12.24&g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부터 &lt;22&gt;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b>부 칙 &lt;환경부령 제281호, 2008.3.3&gt;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p> <p>② 생략</p> <p><b>부 칙 &lt;법률 제11060호, 2011.9.16&g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p> <p>②부터 ⑥까지 생략</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gt;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p> <p>⑭부터 &lt;36&gt;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2740호, 2011.3.29&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b>부칙 &lt;환경부령 제489호, 2012.12.24&gt;</b></p>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b>부 칙 &lt;법률 제11690호, 2013.3.23&gt; (정부조직법)</b></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515&gt;까지 생략          &lt;516&gt;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lt;517&gt;부터 &lt;710&gt;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gt;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p> <p>② 생략</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

##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조치기준	
		1차	2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준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1.3.2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250	500	1,000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기 준
1. 관측장소의 요건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70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측소의 위치	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관측소의 주변 환경	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산악지역 등 특수목적에 위한 관측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교통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중 교량 및 터널의 출입구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상관측

[별표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2호관련)

1. 각 관측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상측기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부의 기상요소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 가. 온도계
  - 나. 기압계
  - 다. 풍향계
  - 라. 풍속계
  - 마. 강수량계
  - 바. 강수유무계
2. 제1호 각 목의 기상측기를 제외한 기상측기는 각 관측시설의 관측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3호관련)

기상요소	관측단위	마지막 자리
기 온	섭씨(℃)	0.1
습 도	백분율(%)	1
풍 향	도(°)	1
풍 속	초당미터(m/s)	0.1
강수량	밀리미터(mm)	0.1
적 설	센티미터(cm)	0.1
기 압	헥토파스칼(hPa)	0.1
일 조	시간(h)	0.1
일 사	제곱미터당 메가줄(MJ/m <sup>2</sup> )	0.01
증발량	밀리미터(mm)	0.1
지면온도	섭씨(℃)	0.1
지중온도	섭씨(℃)	0.1
초상(草上)온도	섭씨(℃)	0.1
수 온	섭씨(℃)	0.1
수 위	미터(m)	0.1
물결높이	미터(m)	0.1
물결방향	도(°)	1
물결주기	시간(s)	0.1

[별표 4]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제9조관련)

측기의 종류	검정유효기간(년)
온도계	3
기압계	3
습도계	3
풍향계	3
풍속계	3
일조계	5
일사계	5
강수량계	3
증발계	5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각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별표 5] <개정 2007.6.29>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제10조제1항관련)

측기의 종류		구 분	검 정 기 준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1. 검정범위 ·기차(器差), 교차(較差)의 허용범위 ·0℃ 기준 5℃ 간격 검정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268,000
기압계	액주형		1. 검정범위 ·기차, 극차(極差)의 허용범위 ·7단계 검정(800, 850, 900, 950, 980, 1010, 1040 hPa)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117,900
습도계			1. 검정범위 ·기차, 극차의 허용범위 ·30, 60, 90% 3단계 검정	97,800
풍향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16방향 검정	42,300
풍속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구간검정(기동, 3, 5, 10, 20, 30, 40, 50, 60, 70 m/s)	135,000
일조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직달일사 120W/m <sup>2</sup> 검정	143,400
일사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	97,600
강수량 계	히터부착형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20mm의 전도우량 검정	163,500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히터의 접점(4℃ ± 2℃)과 분점(15℃ ± 2℃)상태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92,100
증발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 비 고  
 1. "기차(器差)"란 검정대상측기에 나타난 값에서 기준기에 나타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2.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값을 말한다.  
 3.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별표 6]

기상측기 검정설비의 요건(제12조관련)

관측요소	검 정 설 비		요 건
온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수조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40℃ ~ 100℃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기압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800hPa ~ 1040hPa 이상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습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0% ~ 100%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	
풍향	검정 기본장비	풍향관	측정범위가 0° ~ 360° 이고, 최소 눈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향관	
풍속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환경 및 범위가 0% ~ 70%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속 표출기	
	기준기	초음파 풍속계,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사	검정 기본장비	일사량 표출기	실시간 일사량(W/m <sup>2</sup> )을 판 독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일사량 표출기	
	기준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강수량	검정 기본장비	부피 또는 질량장치	20mm/h의 강수량을 자동 또 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 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부피 또는 질량장치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별표 7]

검정증인의 표시(제13조관련)

1.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가. 검정필증

←-----60mm-----→		40 mm
<b>검 정 필 증</b>		
검정번호	제 호	
기상측기명		
기상측기번호(일련번호)	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30mm-----→	←-----30 mm-----→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 류	인 형 상		규 격	비 고
	앞 면	뒷 면		
검정필 봉인			원형지름 6mm	1. 검정기관이 기상청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기상청으로 표시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기관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검정대행기관명을 표시
검정필 고무인			원형지름 8mm	

2.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

가. 검정면제필증

←-----60mm-----→		40 mm
<b>검 정 면 제 필 증</b>		
검정번호	제 호	
기상측기명		
기상측기번호(일련번호)	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30mm-----→	←-----30mm-----→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 류	인 형 상		규 격	비 고
	앞 면	뒷 면		
검정면제필 봉인			원형지름 6 mm	1. 검정기관이 기상청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기상청으로 표시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기관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검정대행기관명을 표시
검정면제필 고무인			원형지름 8 mm	



###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기상측기명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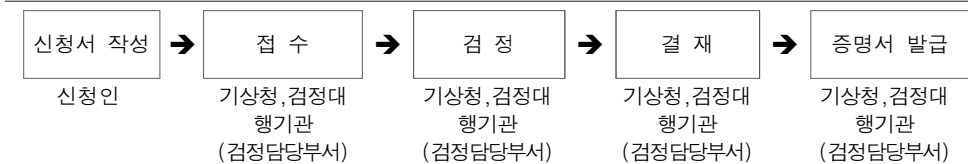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뒷면참조
------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측기의 종류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268,000	
기압계	액주형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117,900	
습도계		97,800	
풍향계		42,300	
풍속계		135,000	
일조계		143,400	
일사계		97,600	
강수량계	히터부착형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형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92,100
증발계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위와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24>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bottom: 10px;">제 호</div> <h2 style="margin: 0;">기상측기검정증명서</h2>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검정내용	기상측기명					
	검정요소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비고
※ 붙임 : 기상측기검정성적서						
<p>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width: 60%;"> <input type="checkbox"/> 기상청장  <input type="checkbox"/> 검정대행기관의 장(     )             </div> <div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margin-left: 20px;">                 직인             </div> </div>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4>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검정분야		
업무 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기상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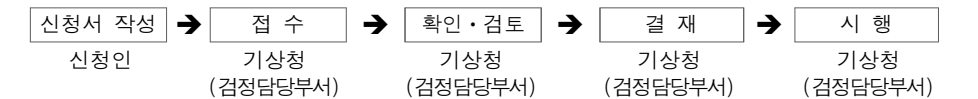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의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6. 지정사항
7.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 호

공 무 집 행 증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위 사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인

81mm×55mm 신문용지 120g/㎡(재활용품)



### Ⅲ. 기상산업진흥법



## 목 차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p> <p><b>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b></p> <p>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b></p> <p>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7조(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취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b></p> <p>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p>	<p>제1조(목적)</p>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p> <p>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p> <p>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p> <p>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p>	<p>제1조(목적)</p> <p>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4조(변경신고 사항)</p> <p>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b>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b></p> <p>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p> <p><b>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b></p> <p>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p> <p>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p> <p><b>제7장 보칙</b></p> <p>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p> <p>제23조(청문)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p> <p><b>제8장 벌칙</b></p>	<p>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제11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p> <p>제12조(기상 분야 자격)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7조(면허 수수료)</p> <p>제18조(자료 제출)                      제19조(출입·검사)</p>	<p>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p> <p>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p> <p>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제10조(면허의 신청)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제12조(면허 수수료)                      제13조(보수교육)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p> <p>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산업진흥법</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09. 6. 9 법률 제 9771호                      타법개정 2011. 3. 9 법률 제10445호                      (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7. 16 법률 제11906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li> <li>2.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기상예보업”이란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5.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6. “기상컨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7. “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8. “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li> <li>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4호                      일부개정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41호                      일부개정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69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09. 12. 10 환경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2. 5. 7 환경부령 제453호                      일부개정 2014. 1. 14 환경부령 제539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b></p> <p>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p>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p>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b></p> <p>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건설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p> <p>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li> <li>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li> </ol>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li> <li>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기상사업 등록증</li> </ol>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li> </ol> <p>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li> <li>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li> <li>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li> <li>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7.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인력의 변경</li> <li>2.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변경</li> <li>3. 사업개시 예정일의 변경</li> </ol>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b></p> <p>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lt;개정 2011.3.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 연구기관</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li> <li>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li> <li>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li> <li>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li> </ol>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li> <li>2.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li> <li>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li> <li>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li> <li>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li> <li>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li> <li>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li> <li>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li> </ol> <p>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원의 인건비</li> <li>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li> </ol>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li> <li>2.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허락 또는 그 알선</li> <li>3.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 등의 우선 구매</li> <li>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li> <li>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li> <li>4. 위탁연구개발비</li> </ol> <p>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li> <li>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li> </ol> <p>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p> <p>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p> <p>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7.16.]</p> <p><b>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b></p> <p>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운영 [본조신설 2014.1.7]</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li> <li>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li> </ol> <p>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p> <p>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p> <p>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p> <p>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사업계획서</li> <li>3. 정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lt;개정 2013.7.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li> <li>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li> <li>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li> <li>4.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li> <li>5.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li> <li>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⑥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lt;개정 2013.7.16&gt;</p> <p>⑦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p> <p>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b></p> <p>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li> </ol>	<p>제11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4.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li> <li>2.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전시·홍보</li> <li>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li> <li>4.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li> <li>5. 생활·보건·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및 운영</li> <li>6.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li> <li>7.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li> </ol> <p>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취득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p> <p>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p> <p>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p> <p>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p> <p>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p> <p>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p> <p>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p>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16조(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li> <li>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li> <li>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li> </ol> <p>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7조(면허 수수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lt;개정 2011.3.29&gt;</p>	<p>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li> <li>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li> <li>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li> <li>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li> </ol> <p>제13조(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한다.</p> <p>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보칙</b></p> <p>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출입·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li> <li>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li> <li>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li> </ol> <p>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벌칙</b></p> <p>제26조(벌칙)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li> <li>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li> <li>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li> <li>5.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li> </ol> <p>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법률 제9771호, 2009.6.9&gt;</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p> <p>제3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p> <p>제4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대통령령 제21874호, 2009.12.7&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p> <p>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p> <p>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환경부령 제353호, 2009.12.10&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p> <p>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p> <p>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p> <p>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p> <p>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⑤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p> <p>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라 한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p> <p>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p> <p>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p> <p>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p> <p>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p>		<p>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기상산업진흥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
<p>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칙 &lt;법률 제10445호, 2011.3.9&gt;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20&gt;까지 생략  &lt;21&gt;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lt;22&gt;부터 &lt;24&gt;까지 생략</p> <p>제3조 및 제4조 생략</p> <p><b>부칙 &lt;법률 제11906호, 2013.7.16&gt;</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2741호, 2011.3.29&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대통령령 제25069호, 2014.1.7&gt;</b>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환경부령 제453호, 2012.5.7&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환경부령 제539호, 2014.1.14&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업종	인력	시설
1. 기상 예보업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기상 감정업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업종	인력	시설
3. 기상 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4. 기상 장비업	-	

-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별표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인력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5.7>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기본 자료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107,000	
기상 관측 자료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국지기상 관측 자료	90,720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8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다. 항공기상 특보 자료	20,000	
	가. 수치모델 격자 자료 나.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다. 기상자원지도	150,000 150,000 50,000	
수치 자료	가. 수치모델 격자 자료 나.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다. 기상자원지도	45,000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성 자료	기상위성 자료	45,000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 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낙뢰 자료	낙뢰 관측 자료	10,000	

[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대상 면허	교육 내용	시간
기상예보사	1. 일기도 분석 기법 2. 수치예보 해석 기법 3. 영상자료(위성, 레이더, 낙뢰 등) 해석 기법 4. 예보 실무 및 예보문 작성 기법 5. 브리핑 실습 6. 생활기상 활용 기법	4주 (140시간)
기상감정사	1. 기상 관측 자료 통합분석 기법 2. 지리 분석 및 기상현상특성 분석 기법 3. 조사 방법 및 기상자료통계 분석 기법 4. 기상역학 및 열역학 이론 5. 현장감정 실습 및 감정서 작성 기법 6. 기후 및 기상재해 분석 기법	4주 (140시간)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대상 면허	교육 내용	시간
기상예보사	1. 소양 교육 2. 신기술 동향 3. 기상 관련 법규	1일(7시간)
기상감정사	1. 소양 교육 2. 신기술 동향 3. 감정 관련 법규	1일(7시간)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각각 감경(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상사업자의 사업 또는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기상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나) 1개월 이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6)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7호			
가) 3차 이하 위반		경고	사업정지 1개월	
나) 4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다) 5차 이상 위반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7)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7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8)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8호	면허취소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7>

##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업종 [ ] 기상예보업, [ ] 기상감정업, [ ] 기상컨설팅업, [ ] 기상장비업	
	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 일반수요자 대상, [ ] 특정 수요자 대상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 ] 기본자료, [ ] 기상관측자료, [ ] 국지기상관측자료, [ ] 항공기상자료, [ ] 수치자료, [ ] 위성자료, [ ] 레이더자료, [ ] 낙뢰자료	
	사업개시 예정일	
인력확보 현황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상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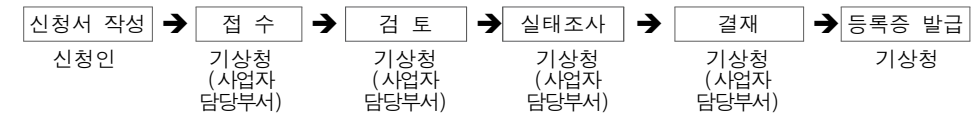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기본 자료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90,720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다. 항공기상 특보자료	80,000		
	가. 수치모델 격자 자료 나.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다. 기상자원지도	150,000		
	다. 기상자원지도	50,000		
위성 자료	기상위성 자료	45,000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 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낙뢰 자료	낙뢰 관측 자료	10,000		

[별지 제2호서식]

(앞쪽)

<b>사업계획서</b>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사 무 소	①상호(단체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                    )	
2. 기상사업의 목적 -			
3. 기상사업의 계획 가. 사업의 방법			
나. 관련 기술 및 시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뒤쪽)

4. 예보사업의 계획(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예보사항 및 예보발표일시				
예보사항				⑦예보발표일시
업무범위	④예보기간	⑤예보하는 기상현상	⑥예보대상 구역	
⑧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				
⑨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				
나. 수집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및 그 입수방법				
⑩수집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입수방법			
	⑪입수처	⑫통신회선		
다. 생산·발표한 예보자료의 보관				
⑬예보의 종류		⑭보관기간		

※ 작성요령

- 가. ④란은 예보의 대상이 되는 시간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 나. ⑤란은 기온, 강수, 바람, 기압 등 예보하려는 기상현상을 기록합니다.
- 다. ⑥란은 육상예보의 경우에는 도·시·군 단위를, 해상예보의 경우에는 예보대상 바다의 위도와 경도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 라. ⑦란은 예보를 발표하는 기준 시각 및 예보 발표 주기를 기록합니다.
- 마. ⑧란과 ⑨란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와 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바. ⑩란은 예보를 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국내의 기상정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 사. ⑪란은 예보를 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국내의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록합니다.
- 아. ⑫란은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자료부터 기상정보를 전송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유·무선 통신수단의 종류 및 속도를 기록합니다.
- 자. ⑬란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초단기, 단기, 중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차. ⑭란은 예보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기록합니다.



제 호

## 기상사업 등록증

1. 상호(단체명)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영업의 종류
6. 업 무 범 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 ]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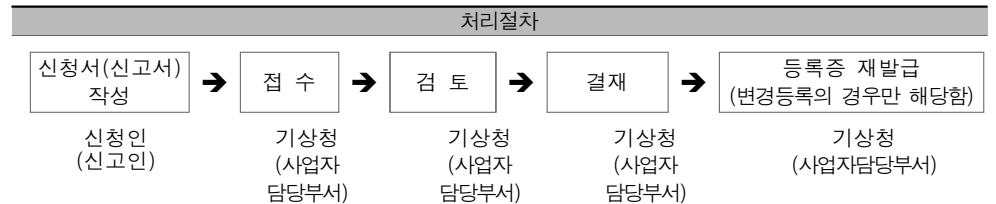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상사업등록번호	기상사업등록일	
	등록업종		
신청(신고)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 ] 변경등록을 신청  
[ ]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인력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근 기상인력 명 및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명	
시설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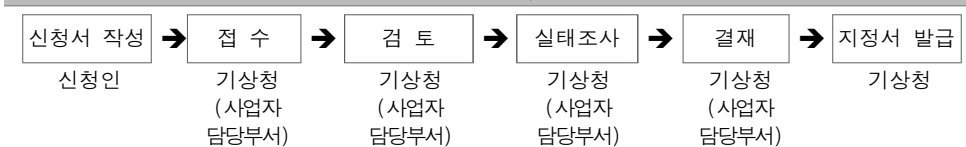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5.7>

제 호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6. 영업 개시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7>

[ ] **기상예보사** 면허 신청서  
[ ] **기상감정사**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 취득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관	교육기간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수입인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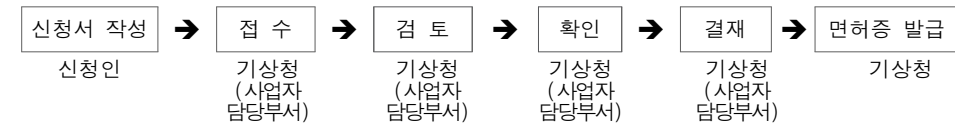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7>

[ ] **기상예보사** 면허 등록대장  
[ ] **기상감정사**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면허번호 :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관	교육기간
발급일	발급자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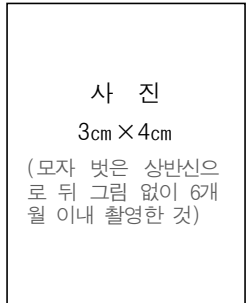
변동사항					
날짜		내 용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재발급		
날짜	교육기관	확인자	날짜	내용	확인자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2.5.7>

제 호

**기상○○사 면허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 유의사항 >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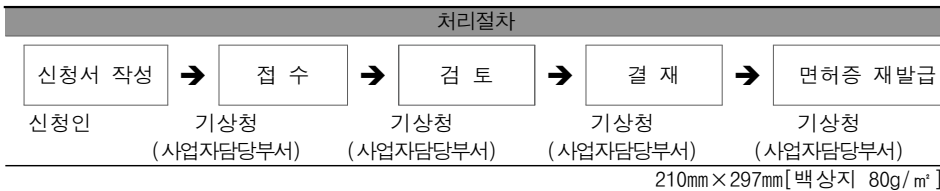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4>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면허번호	발급일		
사유	[ ] 면허증 분실 [ ] 면허증 손상 [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 ] 기상예보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기상감정사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2장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구(舊) 면허증은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2천원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사진 2장 나. 면허증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사진 2장 나. 면허증 다.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b>공 무 집 행 증</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p> </div>
성명 <b>기 상 청</b>

55mm × 85mm (보존용지(1종)120g/㎡)

(뒤쪽)

<b>공 무 집 행 증</b>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기상산업진흥법」 제 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상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IV.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목 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2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제5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방법)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 제3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제4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제1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20조(기술지원)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23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제6장 보칙

제24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약)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제26조(손실보상)

제27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 정 2014. 1.21 법률 제1232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관측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정보를 관측·수집·송신·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4.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6.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 관리
-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제2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제5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3.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측 장비 점검)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점검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

-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 등에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24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약)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12320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V.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목 차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3조(관할구역)</p> <p><b>제2장 기상청</b></p> <p>제4조(직무) 제5조(하부조직) 제6조(차장) 제7조(대변인)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의2(감사담당관) 제9조(운영지원과)</p> <p>제10조(예보국) 제11조(관측기반국) 제12조(기후과학국) 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제14조(위임규정)</p> <p><b>제3장 국립기상연구소</b></p> <p>제15조(직무) 제16조(소장) 제17조(하부조직)</p>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p> <p><b>제2장 기상청</b></p> <p>제2조(차장) 제3조(대변인)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의2(감사담당관) 제5조(운영지원과) 제5조의2 [제4조의2로 이동 &lt;2012.5.31&gt;] 제6조(예보국) 제7조(관측기반국) 제8조(기후과학국) 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p> <p><b>제3장 국립기상연구소</b></p> <p>제10조(국립기상연구소)</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지방기상청</b></p> <p>제18조(직무) 제19조(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제20조(지방기상청장) 제21조(하부조직) 제22조(기상대)</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b></p> <p>제22조의2(직무) 제22조의3(센터장) 제22조의4(하부조직)</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b></p> <p>제22조의5(직무) 제22조의6(센터장) 제22조의7(하부조직)</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항공기상청</b></p> <p>제23조(직무)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공무원의 정원</b></p> <p>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지방기상청</b></p> <p>제11조(지방기상청)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b></p> <p>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b></p> <p>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항공기상청</b></p> <p>제14조(항공기상청)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공무원의 정원</b></p> <p>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삭제 &lt;2013.3.23&gt;</b></p> <p>제28조 삭제 &lt;2013.3.23&gt;</p>	<p>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p> <p>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삭제 &lt;2013.3.23&gt;</b></p> <p>제19조 삭제 &lt;2013.3.23&gt;</p> <p>제20조 삭제 &lt;2013.3.23&gt;</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p> <p>법명변경 1992. 3. 13 대통령령 제13614호                      타법개정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1호                      (경제기획원직제중일부개정령)                      일부개정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15호                      일부개정 1994. 9. 9 대통령령 제14379호                      타법개정 1995. 2. 24 대통령령 제14532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일부개정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99호                      일부개정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4호                      일부개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40호                      일부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0호                      타법개정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일부개정령)                      타법개정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                      전부개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1호                      일부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14호                      타법개정 1999. 8. 23 대통령령 제16541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전부개정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6호                      일부개정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1호                      일부개정 2001. 12. 1 대통령령 제17421호                      일부개정 2002. 6. 1 대통령령 제17619호                      타법개정 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8호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4호                      타법개정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타법개정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타법개정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9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타법개정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40호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p>	<p style="text-align: center;"><b>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p> <p>제 정 1998. 3. 3 과학기술부령 제 2호                      일부개정 1998. 12. 31 과학기술부령 제 5호                      일부개정 1999. 10. 2 과학기술부령 제 12호                      일부개정 2000. 3. 3 과학기술부령 제 15호                      전부개정 2000. 7. 29 과학기술부령 제 20호                      일부개정 2000. 10. 30 과학기술부령 제 23호                      일부개정 2000. 12. 30 과학기술부령 제 24호                      일부개정 2001. 12. 6 과학기술부령 제 35호                      일부개정 2002. 6. 1 과학기술부령 제 36호                      일부개정 2002. 6. 26 과학기술부령 제 39호                      일부개정 2003. 11. 27 과학기술부령 제 49호                      일부개정 2004. 2. 17 과학기술부령 제 52호                      일부개정 2004. 3. 22 과학기술부령 제 54호                      일부개정 2004. 5. 29 과학기술부령 제 56호                      일부개정 2005. 1. 24 과학기술부령 제 60호                      일부개정 2005. 3. 14 과학기술부령 제 62호                      일부개정 2005. 4. 16 과학기술부령 제 64호                      일부개정 2005. 6. 29 과학기술부령 제 67호                      전부개정 2005. 7. 26 과학기술부령 제 69호                      일부개정 2006. 5. 11 과학기술부령 제 85호                      일부개정 2006. 7. 24 과학기술부령 제 94호                      전부개정 2007. 3. 16 과학기술부령 제 97호                      일부개정 2007. 4. 20 과학기술부령 제101호                      일부개정 2007. 9. 14 과학기술부령 제107호                      일부개정 2007. 11. 30 과학기술부령 제109호                      전부개정 2008. 3. 3 환경부령 제260호                      일부개정 2008. 6. 25 환경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08. 10. 22 환경부령 제306호                      일부개정 2008. 12. 31 환경부령 제315호                      전부개정 2009. 4. 30 환경부령 제331호                      일부개정 2009. 10. 19 환경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09. 12. 22 환경부령 제354호                      일부개정 2009. 12. 31 환경부령 제357호                      일부개정 2010. 4. 13 환경부령 제368호</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타법개정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p> <p>타법개정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일부개정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61호</p> <p>타법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일부개정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1호</p> <p>타법개정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96호 (고위공무원단체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타법개정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6호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전부개정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1호</p> <p>일부개정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13호</p> <p>타법개정 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6호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일부개정 2007. 9. 14 대통령령 제20271호</p> <p>타법개정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전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8호</p> <p>일부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4호</p> <p>타법개정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일부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5호</p> <p>타법개정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0호 (기상법 시행령)</p> <p>일부개정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4호</p> <p>일부개정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15호</p> <p>타법개정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일부개정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2호</p> <p>타법개정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9호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일부개정 2012. 5. 30 대통령령 제23819호</p> <p>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8호</p>	<p>일부개정 2010. 7. 30 환경부령 제376호</p> <p>일부개정 2011. 5. 30 환경부령 제415호</p> <p>일부개정 2011. 8. 30 환경부령 제420호</p> <p>일부개정 2011. 9. 29 환경부령 제423호</p> <p>일부개정 2012. 5. 31 환경부령 제458호</p> <p>일부개정 2012. 9. 10 환경부령 제475호</p> <p>일부개정 2012. 10. 18 환경부령 제481호</p> <p>일부개정 2013. 1. 28 환경부령 제496호</p> <p>일부개정 2013. 3. 23 환경부령 제504호</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국립기상연구소를 둔다.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위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둔다. &lt;신설 2009.4.30&gt;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lt;신설 2010.4.13&gt;                  ⑤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항공기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을 둔다. &lt;개정 2009.4.30, 2010.4.13.&gt;</p> <p>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기상청</b></p> <p>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예보국·관측기반국·기후과학국 및 기상산업정보화국을 둔다. &lt;개정 2009.4.30&gt;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lt;개정 2010.4.13.&gt;</p> <p>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lt;개정 2013.12.24.&gt;</p> <p>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기상청</b></p> <p>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lt;개정 2013.12.30&gt;</p> <p>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1.9.29&gt;</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lt;개정 2010.4.13, 2011.10.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li> <li>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li> <li>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li> </ol> <p>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lt;개정 2010.4.13, 2013.9.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정책의 수립·종합·조정</li> <li>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li> <li>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li> <li>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li> <li>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li> <li>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li> <li>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li> <li>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li> <li>7. 소관 법제 업무 총괄</li> <li>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li> <li>9. 규제심사 및 정비</li> <li>10. 제안제도의 운영</li> <li>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li> <li>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li> <li>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li> <li>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li> <li>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li> <li>17. 북한지역 기상·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li> <li>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li> </ol>	<p>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p> <p>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인력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2.5.31, 2013.10.16&gt;</p> <p>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li> <li>4. 청내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집행의 조정</li> <li>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li> <li>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li> <li>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li> <li>9. 국정과제·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li> <li>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li> <li>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li> <li>4. 청내 비정규직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li> <li>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li> <li>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li> </o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li> <li>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li> <li>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li> <li>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li> <li>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li> <li>15. 법령·훈령·예규·고시의 심사</li> <li>16.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li> <li>17. 법령의 질의·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li> <li>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li> <li>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li> <li>20.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li> <li>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li> <li>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li> <li>23.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li> </ol> <p>⑤ 삭제 &lt;2010.4.13&gt;</p> <p>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청내 교재 편찬·관리 및 교육시설·교육기자재 수급·관리</li> <li>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li> <li>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li> <li>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li> <li>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li> <li>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li> <li>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li> <li>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li> <li>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ol> <p>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lt;개정 2010.4.13,</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li> <li>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li> <li>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li> <li>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li> </ol> <p>[본조신설 2010.4.13.]</p> <p>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안에 관한 사항</li> <li>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li> <li>3. 문서·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li> <li>4. 삭제 &lt;2010.4.13&gt;</li> <li>5. 삭제 &lt;2010.4.13&gt;</li> <li>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7.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li> <li>8. 삭제 &lt;2010.4.13&gt;</li> <li>9. 삭제 &lt;2010.4.13&gt;</li> <li>10. 삭제 &lt;2010.4.13&gt;</li> <li>11. 삭제 &lt;2010.4.13&gt;</li> <li>12. 예산의 집행</li> </ol>	<p>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li> <li>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li> <li>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5. 삭제 &lt;2010.4.13&gt;</li> <li>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li> <li>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8.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li> <li>9. 북한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li> <li>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li> <li>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li> </ol> <p>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5조의2에서 이동 &lt;2012.5.31&gt;]</p> <p>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lt;2009.4.30&gt;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lt;2010.4.13&gt;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치모델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9.17&gt;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단기예보의 분석·총괄                      6. 서울지역 중기·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삭제 &lt;2013.3.23&gt;                      10. 삭제 &lt;2013.3.23&gt;                      11. 삭제 &lt;2013.3.23&gt;                      12. 삭제 &lt;2013.3.23&gt;                      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시행</p>	<p>제5조의2                      [중전 제5조의2는 제4조의2로 이동 &lt;2012.5.31&gt;]</p> <p>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수치모델개발과·수치자료응용과·슈퍼컴퓨터운영과·예보기술분석과 및 수치자료통합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수치자료통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3.3.23, 2013.10.16&gt;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조정 및 지원                      9. 삭제 &lt;2010.4.13&gt;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11. 삭제 &lt;2010.4.13&gt;                      12. 중·단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및 정보의 생산                      14. 방사능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관리</p> <p>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관리</p> <p>④ 수치모델관리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lt;개정 2009.4.30, 2009.12.31, 2010.4.13.&gt;</p>	<p>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총괄</li> <li>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li> <li>3. 중·단기예보, 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li> <li>4.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li> <li>5. 기상예보·기상특보·기상정보 등의 통보</li> <li>6.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 운영 및 기상정보 전화 상담업무</li> <li>7. 북한지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생산 및 통보</li> </ol> <p>⑤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li> <li>3. 초단기·단기·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li> <li>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li> <li>5. 확률론적 예보기법의 수치모델 입력자료 생성 방법 개발·개선</li> <li>6. 수치예보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li> <li>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감독</li> <li>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li> </ol> <p>⑥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동화 및 통계예측모델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li> <li>2. 초단기·단기·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li> <li>3. 자료동화용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li> <li>4.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입력과정 개발 및 적용</li> <li>5.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응용과정의 개발·개선</li> <li>6. 통계예측모델 개발·자료관리·운영</li> <li>7. 통계예측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 및 제공</li> </ol> <p>⑦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09.12.31, 2010.4.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관리</li> <li>3.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관리·검증 및 평가</li> <li>4. 삭제 &lt;2013.10.16&gt;</li> <li>5.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li> <li>6.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li> <li>7.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적용 및 국내외 협력</li> <li>8.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관리</li> </ol> <p>⑧ 삭제 &lt;2013.3.23&gt;</p> <p>⑨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신설 2010.4.13, 2013.3.2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li> </o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진관리관 1명을 둔다.                      &lt;개정 2009.4.30&gt;                      ② 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gt;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종합·조정                      11.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조정·평가                      12.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5.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p>	<p>2.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기상 및 특이 기상 분석·제공에 관한 사항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10. 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개선 및 운영                      ⑩ 수치자료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신설 2013.10.16&gt;                      1. 수치자료통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통합 입력과정 개발 및 개선                      3. 신규 관측자료의 수치자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개선                      4. 자료통합을 위한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5. 지구시스템모델(대기, 해양, 지표 등)의 수치자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개선                      6. 관측자료의 수치예측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 개발 및 개선                      7. 관측망 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지원</p> <p>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해양기상과·기상기술과·국가태풍센터·지진정책과 및 지진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3.3.23&gt;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16.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p> <p>17.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p> <p>18.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p> <p>19.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p> <p>20.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p> <p>2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p> <p>22. 지진관측망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p> <p>23.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p> <p>24.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p> <p>25. 화산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p> <p>④ 지진관리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lt;개정 2009.4.30, 2010.4.13, 2012.5.30, 2013.3.23&gt;</p> <p>[제목개정 2009.4.30.]</p>	<p>15.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16.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p> <p>17. 청내 기상측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18.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p> <p>19.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관리</p> <p>20. 기상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p> <p>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④ 삭제 &lt;2010.4.13&gt;</p> <p>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li> <li>2.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개발</li> <li>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분석</li> <li>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li> <li>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li> <li>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li> <li>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li> <li>9. 국내외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li> <li>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⑥ 기상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3.10.16&gt;</li> <li>2.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3. 자체연구사업(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연구개발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조정·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삭제 &lt;2013.10.16&gt;</li> <li>6. 삭제 &lt;2013.10.16&gt;</li> <li>7. 기상기술개발원의 관리·감독</li> <li>8. 「기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li> <li>9.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li> <li>10. 출연연구사업의 정산 및 실태점검</li> <li>11.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p>⑦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신설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li> <li>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li> <li>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li> <li>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li> <li>6. 태풍에 관한 연구</li> </o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gt;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p>	<p>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⑧ 지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7.30, 2013.3.23&gt;                      1.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의2. 화산의 관측·분석·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삭제 &lt;2013.10.16&gt;                      3.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4.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국가적 활용 증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6.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 등)분야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7.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8.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에 관한 사항                      9.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 관련 업무                      ⑨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7.30, 2013.3.23, 2013.10.16&gt;                      1. 국내외 발생지진 분석 및 통보                      1의2. 화산의 관측·분석·정보수집 및 통보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6. 자연지진·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분석업무의 개선                      7.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8.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항</p> <p>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기후변화감시센터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관리 및 통보</p> <p>5. 수문(水文)·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p> <p>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기후의 감시 및 조사·분석</p> <p>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p> <p>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분석·조사 및 발표</p> <p>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p> <p>10. 삭제 &lt;2013.9.17&gt;</p> <p>11. 삭제 &lt;2013.9.17&gt;</p> <p>12. 삭제 &lt;2013.9.17&gt;</p> <p>[제목개정 2009.4.30.]</p>	<p>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3.3.23, 2013.10.16&gt;</p> <p>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기후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li> <li>4. 기후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li> <li>7.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대응체제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li> <li>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관리·감독</li> <li>9의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감독</li> <li>9의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li> <li>9의4.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li> <li>9의5.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li> <li>10.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li> <li>11.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12.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13. 삭제 &lt;2013.10.16&gt;</li> <li>14. 삭제 &lt;2013.10.16&gt;</li> <li>1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li> <li>16. 삭제 &lt;2013.10.16&gt;</li> <li>17. 삭제 &lt;2013.10.16&gt;</li> <li>18. 삭제 &lt;2013.10.16&gt;</li> <li>19. 삭제 &lt;2013.10.16&gt;</li> <li>20. 삭제 &lt;2013.10.16&gt;</li> <li>2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3.3.2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li> <li>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검증</li> </o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li> <li>4. 기후예측모델의 운영·검증·개선 및 관리</li> <li>5. 기후예측·감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li> <li>6. 삭제 &lt;2013.10.16&gt;</li> <li>7. 이상(異常)기상 및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분석</li> <li>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li> <li>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li> <li>9의2. 세계기상기구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li> <li>9의3. 기후예측·감시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li> <li>10. 삭제 &lt;2010.4.13&gt;</li> <li>1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li> <li>11의2.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감시·예측·분석·기술개발 및 서비스</li> <li>12. 삭제 &lt;2013.10.16&gt;</li> <li>13. 삭제 &lt;2013.10.16&gt;</li> <li>14. 삭제 &lt;2013.10.16&gt;</li> <li>15. 삭제 &lt;2013.10.16&gt;</li> <li>16. 삭제 &lt;2013.10.16&gt;</li> <li>17. 북한지역 기후재해 및 동향분석서의 생산</li> <li>18. 삭제 &lt;2013.10.16&gt;</li> <li>19. 삭제 &lt;2013.10.16&gt;</li> <li>20. 삭제 &lt;2013.10.16&gt;</li> <li>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1.8.30, 2013.10.16&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분석</li> <li>2.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분석·조사 및 발표</li> <li>3. 기후변화감시소(기본·보조·위탁관측소)의 운영·관리</li> <li>4.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li> <li>5. 기후변화감시 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li> <li>6. 극지(남극과 북극)에 대한 기후변화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li> <li>7.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li> <li>8.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li> </ol> </li> <li>⑥ 삭제 &lt;2013.3.23&gt;</li> <li>⑦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신설 2013.10.16&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기후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li> <li>2.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li> <li>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li> </ol> </li> </o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li> <li>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li> <li>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발간</li> <li>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li> <li>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li> <li>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운영</li> <li>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li> <li>6.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li> <li>7. 산업 분야별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li> <li>8.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li> <li>9. 계절기상 정보에 관한 사항</li> </ol> <p>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p> <p>② 기상산업정보화국에 기상산업정책과·기상자원과·정보통신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2.5.31&gt;</p> <p>③ 기상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li> <li>3. 군(軍)·항공·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4. 삭제 &lt;2010.4.13&gt;</li> <li>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li> <li>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li> <li>7. 기상관계 법인의 관리</li> <li>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li> <li>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li> <li>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li> <li>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li> <li>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li> <li>13. 재해기상(폭염 및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 도입·개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14. 응용특화기상(생활·산업·생명·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li> <li>15. 산업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li> <li>16. 농림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④ 기상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li> <li>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li> <li>5.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li> </o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국립기상연구소</b></p> <p>제15조(직무)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lt;개정 2009.4.30, 2010.4.13, 2012.5.30, 2013.9.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의 종합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li> <li>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li> <li>3. 기후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li> <li>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li> <li>8. 청내 행정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li> <li>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배포</li> </ol> <p>⑤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li> <li>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li> <li>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li> <li>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li> <li>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li> <li>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li> <li>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li> <li>10.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li> <li>11. 기상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li> <li>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li> <li>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li> <li>14.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li> <li>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li> <li>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li> <li>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li> <li>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li> <li>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li> <li>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국립기상연구소</b></p> <p>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p> <p>②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정책연구과·예보연구과·기후연구과·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황사연구과 및 응용기상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정책연구과장·</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4.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5. 삭제 &lt;2008.6.25&gt;  6.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7.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8.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9. 환경기상 및 미기상(微氣象)에 관한 연구  10.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11. 해양기상, 지진·인공지진·지진해일·화산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12. 기상, 지진 및 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13.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분석  14. 삭제 &lt;2010.4.13&gt;  15.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연구 수행  16.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조사 및 정책연구  17.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구소내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16조(소장)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예보연구과장·기후연구과장·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및 황사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gt;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1.8.30&gt;  1. 소내(所內) 보안에 관한 사항  2. 소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소내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소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소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8. 소내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9. 기상청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연구추진전략의 수립  10. 소내 조사·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11. 소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소내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13. 소내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운영  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④ 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gt;  1. 기상업무 관련 정책·기술, 연구기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2. 기상업무 관련 정책·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관리  3.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연구의 수행  4.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조사 및 정책연구  5.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⑤ 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gt;  1. 대기의 종합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수치예측시스템에 관한 연구  4. 수치예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⑥ 기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gt;  1.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기후·기후변화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5. 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지방기상청</b></p> <p>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li> <li>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 분석</li> <li>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li> <li>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li> </ol>	<p>7.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p> <p>8.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p> <p>⑦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2.5.31,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li> <li>2.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li> <li>3. 해양기상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li> <li>4. 탄소순환에 관한 연구</li> <li>5. 삭제 &lt;2009.12.22&gt;</li> <li>6. 지진·인공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li> </ol> <p>⑧ 황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li> <li>2.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과학적 지원</li> <li>3. 황사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li> <li>4. 황사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li> <li>5. 황사의 특성 및 감시·관측에 관한 연구</li> <li>6. 황사감시망의 구성·운영 및 관리</li> </ol> <p>⑨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09.12.22,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li> <li>2. 환경기상·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li> <li>3. 항공기상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li> <li>4.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局地氣候)에 관한 연구</li> <li>5. 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li> <li>6.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li> <li>7.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li> <li>8.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li> <li>9.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지방기상청</b></p> <p>제11조(지방기상청) ①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0.4.13, 2013.3.23&gt;</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li> <li>6. 삭제 &lt;2010.4.13&gt;</li> <li>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li> <li>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li> <li>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li> <li>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li> <li>10.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li> <li>11. 기상관측·예보·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li> <li>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li> <li>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li> <li>14.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li> <li>15.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팀, 예보과 및 기후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기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3.3.23&gt;</li> <li>③ 삭제 &lt;2011.8.30&gt;</li> <li>④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1.8.30&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li> <li>3. 청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li> <li>4. 물품의 구매 및 조달</li> <li>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li> <li>6. 청내 예산의 집행 및 결산</li> <li>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li> <li>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li> <li>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지역 내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li> <li>2. 관할지역 내 예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li> <li>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li> <li>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li> <li>5. 기상에 관한 상담 및 홍보업무</li> <li>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li> <li>7.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li> </ul> </li> <li>9. 삭제 &lt;2010.4.13&gt;</li> <li>9. 삭제 &lt;2010.4.13&gt;</li> <li>⑥ 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지역 내 기후정보업무의 지도</li> <li>2.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li> <li>4.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li> <li>5.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li> <li>6.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li> <li>7.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li> <li>8. 기상관측·예보·전산·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li> <li>9.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li> <li>10.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li> </ul> </li> </ul>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제19조(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0.4.13, 2013.3.23.&gt;</p> <p>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제22조(기상대) ① 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대를 둔다. &lt;개정 2010.4.13, 2013.3.23&gt;                  ②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기상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lt;신설 2013.3.23&gt;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3.3.23&gt;                  [제목개정 2010.4.13]</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lt;신설 2009.4.30&gt;</b></p> <p>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11.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12.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관리(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p> <p>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0.4.13&gt;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동네예보(백령도·흑산도·진도·고산·성산기상대는 제외한다), 기후자료통계,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0.7.30&gt;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0.7.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기상대: 고층기상·오존층상황의 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인천·춘천·청주·대구·전주기상대: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li> <li>수원기상대: 농업기상조사·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li> <li>진도 및 성산기상대: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li> <li>동해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고층기상관측 및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li> <li>통영·목포·여수·서귀포·보령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추풍령기상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li> <li>서산기상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④ 삭제 &lt;2010.4.13&gt;                  ⑤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되, 대구·안동·창원·전주·목포·청주·인천·수원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진도·백령도·동해·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09.12.31, 2010.4.13, 2010.7.30, 2012.5.31, 2013.3.23, 2013.10.16&gt;                  ⑥ 삭제 &lt;2010.4.13&gt;                  ⑦ 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lt;개정 2010.4.13&gt;                  [제목개정 2010.4.13]</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b></p> <p>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lt;2010.4.13&gt;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lt;2010.4.13&gt;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30.]</p> <p>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4.30.]</p> <p>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4.30.]</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lt;신설 2010.4.13&gt;</b></p> <p>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0.4.13, 2013.3.23&gt;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gt;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li> <li>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li> <li>4.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li> <li>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li> <li>6.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2. 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li> <li>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li> <li>4.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li> <li>5.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li> <li>6.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기상위성의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li> </ol> <p>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4.13, 2011.8.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li> <li>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li> <li>5.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li> <li>6.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lt;신설 2010.4.13&gt;</b></p> <p>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p> <p>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p> <p>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p> <p>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관리</p> <p>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처리·분배·저장</p> <p>7.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p> <p>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4.13.]</p> <p>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10.4.13]</p>	<p>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2.5.31, 2013.3.23&gt;</p> <p>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lt;개정 2011.8.30, 2012.5.31&gt;</p> <p>③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0.7.30, 2011.8.30,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li> <li>2.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li> <li>3.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개선</li> <li>4. 유관기관 기상레이더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li> <li>5.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li> <li>6.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li> <li>7.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li> <li>8. 관악산·구덕산·오성산·면봉산·광덕산·강릉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11.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li> <li>12.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li> <li>13. 낙뢰관측망 구축·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li> <li>1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④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lt;개정 2011.8.30, 2013.10.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li> <li>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li> <li>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운영</li> <li>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분석·처리·분배·저장</li> <li>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li> <li>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분석 및 감시</li> <li>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li> <li>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li> <li>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및 개발</li> <li>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li> <li>12. 낙뢰관측자료의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li> </ol> <p>[본조신설 2010.4.13]</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항공기상청</b></p> <p>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lt;2010.4.13&gt;</p> <p>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3.31&gt;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항공기상청</b></p> <p>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lt;개정 2013.12.11&gt;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공무원의 정원</b></p> <p>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lt;개정 2013.3.23&gt;  ③ 삭제 &lt;2009.4.30.&gt;</p> <p>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공무원의 정원</b></p> <p>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lt;개정 2013.12.11.&gt;</p> <p>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lt;개정 2010.4.13&gt;  ②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lt;개정 2009.4.30, 2013.3.23.&gt;</p> <p>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삭제 &lt;2013.3.23&gt;</b></p> <p>제28조 삭제 &lt;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0698호, 2008.2.29&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p>	<p>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p> <p>③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lt;개정 2011.8.30&gt;</p> <p>④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lt;신설 2010.4.13, 2011.8.30&gt;</p> <p>⑤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0.4.13.&gt;</p> <p>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0.18.]</p> <p>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지진관리관을 말한다. &lt;개정 2011.5.30&gt;</p> <p>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lt;신설 2011.5.30, 2013.12.11&gt;</p> <p>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양기상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및 강원지방기상청 기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lt;신설 2012.5.31, 2013.10.16, 2013.12.1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삭제 &lt;2013.3.23&gt;</b></p> <p>제19조 삭제 &lt;2013.3.23&gt;</p> <p>제20조 삭제 &lt;2013.3.23&gt;</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0864호, 2008.6.25&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392호, 2009.3.31&gt;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p>⑪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455호, 2009.4.30&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lt;개정 2012.5.30&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620호, 2009.7.7&gt; (기상법 시행령)</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31호, 2009.4.30&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1944호, 2009.12.31&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2115호, 2010.4.13&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52 916 1102 986"> <tr> <td style="width: 15%;">항공기상청</td> <td style="width: 10%;">기상청</td> <td style="width: 65%;">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113명</td> </tr> </table> <p>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p>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13명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49호, 2009.10.19&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증원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54호, 2009.12.22&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57호, 2009.12.31&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68호, 2010.4.13&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376호, 2010. 7.30&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p>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13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부칙 &lt;대통령령 제22937호, 2011.5.30&gt;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p> <p>부칙 &lt;환경부령 제415호, 2011.5.30&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환경부령 제420호, 2011.8.30&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p> <p>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p> <p>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p> <p>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p> <p>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3172호, 2011.9.29&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gt;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3819호, 2012.5.30&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p>	<p>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423호, 2011.9.29&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458호, 2012.5.31&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475호, 2012.9.10&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481호, 2012.10.18&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496호, 2013.1.28&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4명(기상주사보 8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 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504호, 2013.3.23&gt;</b></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p>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p>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p> <p>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미래창조과학부</p> <p>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p>	<p>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4745호, 2013.9.17&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520호, 2013.10.16&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6년 9월 3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치자료통합팀장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치자료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자료응용과장이,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예측과장이 각각 분장한다.</p> <p>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4979호, 2013.12.11&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환경부령 제527호, 2013.12.11&gt;</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제25020호, 2013.12.24&gt;</b></p> <p>(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p>

<p><b>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b></p>	<p><b>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b></p>
	<p>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제531호, 2013.12.30&gt;</b></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명 칭	위 치
부산지방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지방기상청	광주광역시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표 2] <개정 2009.4.30, 2009.12.31, 2010.4.13, 2011.9.29, 2012.5.30, 2013.3.23., 2013.12.24>

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총 계	398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97
고위공무원단(차장)	8
3급 또는 4급 이하	388
전문경력관	1

[별표 3] <개정 2009.4.30, 2010.4.13, 2011.9.29, 2012.5.30., 2013.12.11>

기상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총 계	808
일반직 계	808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
3급 또는 4급 이하	803

[별표 4] 삭제 <2013.3.23>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10.16>

###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구미기상대 포항기상대 안동기상대 상주시상대 울진기상대 울산기상대 창원기상대 진주시상대 거창기상대 통영기상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통영시
광주지방기상청	전주시상대 남원기상대 정읍기상대 군산기상대 고창기상대 목포기상대 여수기상대 순천기상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완도기상대 진도기상대 흑산도기상대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신안군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서산기상대 보령기상대 청주시상대 충주시상대 추풍령기상대 인천기상대 백령도기상대 수원기상대 이천기상대 동두천기상대 파주시상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영동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파주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원주시상대 동해기상대 속초기상대 철원기상대 영월기상대 대관령기상대 울릉도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평창군 경상북도 울릉군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대 고산기상대 성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별표 2] <개정 2010.4.13>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칭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전라남도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김해공항기상실	부산광역시
청주공항기상실	충청북도 청원군
대구공항기상실	대구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광주공항기상실	광주광역시
포항공항기상실	경상북도 포항시
사천공항기상실	경상남도 사천시

[별표 3] <개정 2010.7.30, 2011.5.30, 2011.8.30, 2011.9.29, 2012.5.31, 2012.9.10, 2013.1.28, 2013.3.23., 2013.12.30>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98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계	397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48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
행정주사·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82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7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 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5
방호서기보	6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4] <개정 2010.7.30, 2011.5.30, 2011.8.30, 2011.9.30, 2012.5.31, 2012.9.10, 2012.10.18, 2013.1.28, 2013.3.23., 2013.12.30>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98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97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8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7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88
행정주사·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5
방호서기보	6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5] <개정 2010.7.30, 2012.5.31, 2012.9.10, 2013.1.28., 2013.12.1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8
기상연구사	28
사무운영서기보	4

[별표 5의2] <개정 2010.7.30, 2012.5.31, 2012.9.10, 2013.1.28., 2013.12.1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원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원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원	7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8
기상연구사	28
사무운영서기보	4

[별표 6] <개정 2010.7.30, 2011.8.30, 2011.9.29, 2012.5.31, 2012.9.10, 2013.1.28, 2013.12.11>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659
일반직 계	65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원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원	38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9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기상주사보	2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2
운전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	2
선박기관운영주사	2
통신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2
선박기관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4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별표 7] <개정 2010.7.30, 2011.8.30, 2011.9.29, 2012.5.31, 2012.9.10, 2012.10.18, 2013.1.28., 2013.12.11>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659
일반직 계	65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2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9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8
기상주사보	2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
운전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	2
선박기관운영주사	2
통신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2
선박기관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4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별표 8]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3.1.28, 2013.3.23, 2013.12.1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관련)

총계	42
일반직계	4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별표 8의2] <신설 2011.8.30, 2012.5.31, 2013.1.28, 2013.3.23., 2013.12.1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42
일반직계	4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별표 8의3] <개정 2010.7.30, 2011.8.30, 2011.9.29, 2012.5.31, 2013.1.28, 2013.3.23, 2013.12.1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8의4] <신설 2011.8.30, 2011.9.29, 2012.5.31, 2013.1.28, 2013.3.23, 2013.12.1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9] <개정 2010.4.13, 2012.5.31, 2013.12.11>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

총 계	114
일반직 계	11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13

[별표 9의2] <신설 2012.10.18.><개정 2013.10.1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

(제17조의2 관련)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7
일반직 계	7
5급	1
6급	3
7급	2
8급	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9
일반직 계	9
6급	1
7급	3
8급	5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2
8급	1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6급	1
7급	1

8급	4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2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1
8급	1
9급	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8급	1
연구사	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8급	1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7급	1
8급	3
9급	2

[별표 10] 삭제 <2013.3.23>



## Ⅵ. 고 시



##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제 정 2005. 5. 30. 기상청고시 제2005-1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4. 19. 기상청고시 제2010-1호

###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10.4.19>

### 2. 사용료

- 가. 착륙의 경우 5,820원 <개정 2010.4.19>
- 나. 통과비행의 경우 1,980원 <개정 2010.4.19>

### 3. 징수 방법

-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된다.
-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속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항공기상청은 정규사용자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를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9>

###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함.  
[본문신설 2009.8.24]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5-1호, 2005.5.30>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0-1호, 2010.4.19>

- 1.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실시한다.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0호  
 일부개정 2007. 10. 12. 기상청고시 제2007-1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1. 1. 3. 기상청고시 제2010-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3>

1. “관측센서”란 자연대기 상태의 물리량을 감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량(또는 디지털 신호)으로 변화하는 소자 또는 장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아날로그 센서 : 전압의 형식, 부하, 저항, 용량, 전류 등에 따른 전압 신호로 변환되는 센서  
 나. 디지털 센서 : 펄스 또는 진동수에 따라 출력의 bit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센서  
 다. 지능형 센서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지능형 센서
2. “데이터로거”란 관측센서에서 측정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하고, 자료의 1차 품질검사, 시각동기화, 관측한 자료의 저장 및 자료의 송·수신 등을 담당하는 자료수집처리기를 말한다.
3.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상황판을 말한다.
4. “자료구조”란 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수집을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5. “시각동기화”란 관측장소에 설치된 데이터로거의 시각을 우리나라 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내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3>

1. 관측센서, 자료수집처리기 등 각종 하드웨어 사양의 표준규격
2. 자료처리체계, 자료 품질검사, 계산, 형식 등 자료구조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표준규격
3. 측기탑, 데이터로거함 등 부대설비에 관한 표준규격

제4조(적용대상)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적용대상은 기상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등을 자동으로 관측하는 장비일체이다. <개정 2011.1.3>

제5조(표준화 원칙)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표준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3>

1. 세계기상기구 제반 규정의 준수 및 유지
2. 관측의 신뢰성 및 연속성
3. 악기상(호우, 폭설, 강풍 등)과 극한 기상조건(혹한, 혹서, 결빙 등)에서의 안정적 장비운동을 위한 내구성
4. 장비구매의 편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5.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

제6조(관측요소) ① 필수관측요소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로 한다. <개정 2011.1.3>

② 선택관측요소는 기압, 적설,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 일사, 일조, 시정, 현천, 운고, 운량 등으로 한다. <개정 2011.1.3>

③ 관측요소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7조(관측센서의 표준규격) 관측센서에 대한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데이터로거의 표준규격) 데이터로거에 대한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고, 데이터로거의 1차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관측센서의 신호 및 자료처리에 대한 표준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자료구조의 표준규격) 자료구조에 대한 표준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시각동기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관측소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데이터로거에 시각동기화를 시켜야 한다.

제12조(부대장비의 표준규격) 부대장비의 표준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부대설비의 표준규격)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재검토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0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7-1호, 2007.10.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0-5호, 201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7.10.12, 2011.1.3>

관측센서의 표준규격(제7조관련)

관측 센서	형식	내 용	비고
기온 센서	금속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40~+60℃ (초상, 지면, 지중온도 : -40~+100℃)</li> <li>○ 정확도 : ±0.3℃ 이내</li> <li>○ 운용환경 : -50~+50℃</li> <li>○ 분해능 : 0.1℃</li> <li>○ 기타 : 100 Ω의 백금 4선식</li> </ul>	
	박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40~+60℃</li> <li>○ 정확도 : ±0.3℃ 이내</li> <li>○ 운용환경 : -50~+50℃</li> <li>○ 분해능 : 0.1℃</li> <li>○ 기타 : 100 Ω의 백금(유리코팅 또는 보호통)</li> </ul>	
습도 센서 (상대 습도)	정전 용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0~100%</li> <li>○ 정 확 도 : ±3%이내(10~90%)</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li> <li>○ 상대습도 산출</li> </ul>	
풍향 센서	전위 차계식, 그레이 코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0~360°</li> <li>○ 정 확 도 : 5° 이내</li> <li>○ 기동풍속 : 0.5m/s 이하</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 순간풍속 75m/s 이내</li> <li>○ 분해능 : 5°</li> <li>○ 출 력 : 풍향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디지털 값</li> </ul>	
	초음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0~360°</li> <li>○ 정 확 도 : 2° 이내</li> <li>○ 기동풍속 : 0.1m/s</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 순간풍속 70m/s 이내</li> <li>○ 분해능 : 1°</li> <li>○ 출 력 : 풍향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디지털 값</li> </ul>	
풍속 센서	광초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0~75m/s</li> <li>○ 정 확 도 : 10m/s 미만에서 0.5 m/s 이내 또는 10m/s 이상에서 5% 이내</li> <li>○ 기동풍속 : 0.5m/s 이하</li> <li>○ 운용환경: 기온 -50~+50℃, 순간풍속 75m/s 이내</li> <li>○ 분해능 : 0.1m/s</li> </ul>	
	자기 유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0~70m/s</li> <li>○ 정 확 도 : 10m/s 미만에서 0.5 m/s 이내 또는 10m/s 이상에서 5% 이내</li> <li>○ 기동풍속 : 0.1m/s</li> <li>○ 운용환경: 기온 -50~+50℃, 순간풍속 70m/s 이내</li> <li>○ 분해능 : 0.1m/s</li> <li>○ 히터내장(히터작동 범위는 강수량 온도조절용 히터에 준함)</li> </ul>	

관측 센서	형식	내 용	비고
강수량 센서	전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 수 구 : 직경 200mm</li> <li>○ 측정범위 : 1전도(Bucket)당 0.5mm(또는 1.0mm)</li> <li>○ 정 확 도 : 20~50mm/h 강우강도에서 3% 이내</li> <li>○ 재 질 : 스테인리스</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 °C</li> <li>○ 수수구 그물망 : 봉 또는 수평형태의 그물망</li> <li>○ 분 해 능 : 0.5mm 또는 1.0mm</li> <li>○ 히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조절은 4 °C ± 2 °C 이내에서 ON이 되는 Thermostat,</li> <li>15 °C ± 2 °C 이내에서 OFF가 되는 Thermostat 부착</li> </ul> </li> <li>○ 바람막이 부착</li> </ul>	
	무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1,000mm 이상(수동배수와 자동배수 처리 가능)</li> <li>○ 정확도 : ±1%</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C</li> <li>○ 분해능 : 0.1mm</li> <li>○ 바람막이, 수수구부 히팅 기능</li> </ul>	
강수 유무 센서	임 피 던스 검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비, 눈, 우박 등 강수현상</li> <li>○ 정확도 : ±1분</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C</li> <li>○ 감지면 규격 : 금박격자, 15~30° 경사면</li> <li>○ 측면표면 향온유지(단, 어떠한 상태에서도 표면온도는 80°C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우(설)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기온도(-30~0°C)에서 표면온도 15°C 유지</li> <li>·외기온도(0°C이상)에서 표면온도 +15°C 유지</li> </ul> </li> <li>- 강우(설)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면온도는 외기온도 +50°C를 유지</li> </ul> </li> </ul> </li> </ul>	
	정전용량 검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비, 눈, 우박 등 강수현상</li> <li>○ 정확도 : ±1분</li> <li>○ 운용환경 : 기온 -50~+50 °C</li> <li>○ 감지면 규격 : 금박격자, 15~30° 경사면</li> <li>○ 감지면 향온유지</li> </ul>	
기압 센서	정전 용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500 ~ 1080hPa</li> <li>○ 정확도 : ±0.5hPa(750~1080hPa)</li> <li>○ 운용환경 : 기온 -40~+60°C</li> <li>○ 반응시간 : 1초 이내</li> </ul>	

관측 센서	형식	내 용	비고
일사 센서	열전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도(Sensitivity) : 7~17<math>\mu</math>V/(Wm<sup>-2</sup>)</li> <li>○ 온도특성 : ±2%/-20~+50°C</li> <li>○ 비선형성(Non-linearity) : ±0.5%</li> <li>○ 안 정 도 : ±0.8%/년 (Change per year)</li> <li>○ 정 확 도 : 시간변화 3%, 일변화 2%</li> <li>○ 운용환경 : 기온 -40~+60°C</li> <li>○ 분해능 : 1Wm<sup>-2</sup></li> </ul>	
일조 센서	회전 거울식 광다이오 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0~24시간</li> <li>○ 입사각 특성 : ±5%</li> <li>○ 선 형 성 : ±2.5% 이내</li> <li>○ 정 확 도 : ±5%(120W/m<sup>2</sup>), 10분(일) 이내</li> <li>○ 운용환경 : 기온 -20~+40 °C</li> <li>○ 분해능 : 0.1시간</li> </ul>	
시정 현천 센서	전방 산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10m~50,000m 이상</li> <li>○ 정확도 : ±10%이내(10~10,000m미만), ±20%이내(10,000m 이상)</li> <li>○ 광원 : 적외선 등</li> <li>○ 샘플링 : 매 10~15초마다 표본수집</li> <li>○ 운용환경 : 기온 -40°C ~+50°C</li> </ul>	
운량 운고 센서	레이저 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10m(±5m범위허용)~7.5km이상</li> <li>○ 정확도 : 1,000m미만 ±10m, 1,000m이상 ±30m</li> <li>○ 알고리즘이 포함된 일체형</li> </ul>	

[별표 2] <개정 2011.1.3>

데이터로거의 표준규격(제8조관련)

구분	내 용	비고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의 변환(아날로그에서 디지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 수치화한다.</li> </ul> </li> <li>○ 또한 관측센서의 추가 또는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i> <li>○ 1차 품질검사, 시각동기화, 자료의 저장, 자료의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li> </ul>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체형이고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li> <l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확장성, 비례 축소성 및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li> <li>○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료가 저장되도록 한다.</li> </ul>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세서 : 마이크로프로세서</li> <li>○ 저장용량 : 1분 자료 30일 이상 저장</li> <li>○ 인터페이스 : RS232C, RS422, RS485 포트 이상</li> <li>○ 제어장치 :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키패드</li> <li>○ 아날로그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개 이상(Differential 채널 5개 이상 포함)</li> <li>- 전압분해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ngle : 입력전압의 1/15,000배 이하</li> <li>• Differential : 입력전압의 1/30,000배 이하</li> </ul> </li> <li>- 정확도 : 입력전압의 1/1,000배 이하</li> </ul> </li> <li>○ 여기 채널 : 2개 이상</li> <li>○ 디지털 채널 : 8개 이상</li> <li>○ 전압 : 11~16 VDC</li> <li>○ 주파수 채널 : 2개 이상</li> <li>○ A/D bit : 15 bit 이상</li> <li>○ 운용환경 : 기온 -50~+80 ℃</li> <li>○ 체결 : 강화 알루미늄 이상</li> <li>○ 외 장 품 : 데이터로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내부온도 상승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잠금장치와 환기구(이물질 방지망 설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i> </ul> </li> <li>○ 데이터로거의 내부보드는 접지가 되어야 한다.</li> </ul>	

[별표 3] <개정 2007.10.12, 2011.1.3>

데이터로거의 1차 품질검사 기준(제8조관련)

관측센서	오류 처리 기준
온도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단위의 대기온도 값이 -40~+60 ℃ (초상, 지면, 지중온도의 경우 -40~+100 ℃) 범위를 벗어난 경우</li> <li>- 매분단위의 대기·초상·지면·지중온도 값을 “-9999”로 오류표시</li> </ul>
습도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단위의 습도 값이 0~100 % 범위를 벗어난 경우</li> <li>- 매분단위의 습도 값을 “-9999”로 오류표시</li> </ul>
풍향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단위의 풍향 값이 0~360° 범위를 벗어난 경우</li> <li>- 매분단위의 풍향 값을 “-9999”로 오류표시</li> </ul>
풍속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단위의 풍속 값이 0~75 % 범위를 벗어난 경우</li> <li>- 매분단위의 풍속 값을 “-9999”로 오류표시</li> </ul>
강수량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단위의 강수량이 30 mm를 초과하는 경우</li> <li>- 매분단위의 강수량을 “-9999”로 오류표시</li> </ul>
기압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단위의 기압 값이 500~1080 hPa 범위를 벗어난 경우</li> <li>- 매분단위의 기압 값을 “-9999”로 오류표시</li> </ul>

[별표 4] <개정 2007.10.12, 2011.1.3>

관측센서의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제9조관련)

관측요소	신호 및 자료처리	
온도 습도 기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단위 : 0.1 ℃(기온, 초상, 지면, 지중온도), 1 %(습도), 0.1 hPa(기압)</li> <li>샘플링 시간 : 10초</li> <li>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초마다 전기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값으로 변환한다.</li> <li>10초 간격의 6개 자료를 평균하여 1분 자료를 산출한다.</li> </ul> </li> </ul>	
풍향 풍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단위 : 풍향(0.1°), 풍속(0.1 m/s)</li> <li>샘플링 시간 : 0.25초</li> <li>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li> <li>풍향, 풍속센서로부터 0.25초마다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 후 벡터 환산한다.</li> <li>순간풍향·풍속(g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0.25초 간격으로 3초 동안 12개의 샘플링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간격으로 이동 평균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li> <li>1분 동안 수집된 지난 240개의 자료 중 최댓값을 1분 최대순간풍향·풍속으로 산출한다.</li> <li>매 1분마다 지난 10개의 1분값 중에서 최댓값을 10분 최대순간풍향·풍속으로 산출한다.</li> <li>하루 동안 수집된 1분 최대순간풍향·풍속 1440개 중에서 최댓값을 일 최대순간풍향·풍속으로 산출한다.</li> </ul> </li> <li>1분 평균 풍향·풍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25초 간격의 바람벡터 자료를 10초 동안 평균을 구한 후 1분 동안 6개의 자료를 다시 평균하여 매분자료를 산출한다.</li> </ul> </li> </ul>	
강수량	전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단위 : 0.5 mm 또는 1.0 mm</li> <li>1분 강수량 : 센서에서 1초마다 보내온 펄스 신호의 횟수를 1분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li> </ul>
	무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단위 : 0.1 mm</li> <li>1분 강수량 : 센서에서 보내온 1분값 또는 각 센서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다.</li> </ul>
강수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단위 : ON 신호 시 10, OFF 신호 시 00</li> <li>샘플링 시간 : 1분</li> <li>강수현상이 있을 때 10, 없을 때 00</li> </ul>	

[별표 5] <개정 2007.10.12>

자료구조의 표준규격(제10조관련)

1. 기상관측자료

가. 자료구조

- (1) 필수 및 선택 모두 관측 시 : 109 BYTE
- (2) 필수 관측 시 : 63 BYTE
- (3) 강수량 관측 시 : 34 BYTE

I (2)	II (3)	III (5)	IV (1)	V (1)	VI (2)	VII		VIII (2)	IX (2)
						VII-1(91), VII-2(45), VII-3(16)			

구분 기호	내용	바이트수	내용 설명
I	시작 표시	2	'FAFB' (Hex)
II	프로토콜 버전	1	1) 년 : 표현범위 → 0 ~ 99 (2000~2099년)
		1	2) 월 : 표현범위 → 1 ~ 12
		1	3) 일 : 표현범위 → 1 ~ 31
III	날짜/시간	1	1) 년 : 표현범위 → 0 ~ 99 (2000~2099년)
		1	2) 월 : 표현범위 → 1 ~ 12
		1	3) 일 : 표현범위 → 1 ~ 31
		1	4) 시 : 표현범위 → 0 ~ 24
		1	5) 분 : 표현범위 → 0 ~ 59
IV	자료구분	1	'I' : 순간, 'B' : 1 분
V	자료형식 번호	1	0 : 필수 및 선택관측, 1 : 필수관측, 2 : 강수량관측, c : 관측요소에 따라 부여(3~9)
VI	지점번호	2	AWS 지점번호 : 사용비트 → 14 ~ 0번 비트 유효범위 → 1 ~ 65535 자료형태 → 이진 코드
VII	자료내용	VII-1 : 91	필수 및 선택 관측
		VII-2 : 45	필수 관측
		VII-3 : 16	강수량 관측
VIII	CHECK XOR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II, III, IV, V, VI, VII 항목 XOR 한 값
	CHECK SUM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II, III, IV, V, VI, VII 항목 ADD 한 값
IX	끝 표시	2	'FFFE' (Hex)

나. 자료내용 구조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용 설명
필수 관측 요소	A	기온	2	1분 평균 기온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1500 ((관측값 + 100) × 10)
	B	풍향	2	1분 평균 풍향 사용비트 → 11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4095 (이진 코드) 표현범위 → 1 ~ 3599 (관측값 × 10)
	C	풍속	2	1분 평균 풍속 사용비트 → 9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23 (이진 코드) 표현범위 → 1 ~ 1000 (관측값 × 10)
	D	돌풍 풍향	2	1분 돌풍 풍향 0.25초 샘플링, 3초 이동 평균 사용비트 → 11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4095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3599 (관측값 × 10)
	E	돌풍 풍속	2	1분 돌풍 풍속 0.25초 샘플링, 3초 이동 평균 사용비트 → 9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23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1000 (관측값 × 10)
	F	강수량 (0.5/1.0 mm)	2	00시부터 현재까지(일계) 누적강수량 사용비트 → 14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3276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32767 (관측값 × 10)
	G	기 압	2	1분 평균 현지기압 사용비트 → 13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16383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0 ~ 11000 (관측값 × 10)
	H	강수유무	2	1분 강수유무 사용비트 → 3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16 (이진 코드) 표현범위 → 강수 유 : 00, 강수 유 : 10
	I	적 설	2	10분 누적 적설량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5000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5000 (관측값 × 10)
	J	상대습도	2	1분 평균 상대습도 사용비트 → 9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23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1000 (관측값 × 10)
	K	강수량 (0.1mm)	2	00시부터 현재까지(일계) 누적강수량 사용비트 → 14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3276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32767 (관측값 × 10)
	L-1	예비 1	2	예비 1
	L-2	예비 2	2	예비 2
	L-3	예비 3	2	예비 3
	L-4	예비 4	2	예비 4
L-5	예비 5	2	예비 5	
L-6	예비 6	2	예비 6	
L-7	예비 7	2	예비 7	
L-8	예비 8	2	예비 8	
L-9	예비 9	2	예비 9	
L-10	예비 10	2	예비 10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용 설명
선택 관측 요소	a	일사	2	1분 누적 일사량 사용비트 → 14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3276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32767 (누적값(MJ/m <sup>2</sup> ) × 100)
	b	일조	2	00시부터 현재까지(일계) 누적 일조시간 사용비트 → 15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65535 (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65535 (누적시간(초단위))
	c	지면온도	2	1분 평균 지면온도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d	초상온도	2	1분 평균 초상온도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e	지중온도 (5 cm)	2	1분 평균 지중온도(5 c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f	지중온도 (10 cm)	2	1분 평균 지중온도(10 c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g	지중온도 (20 cm)	2	1분 평균 지중온도(20 c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h	지중온도 (30 cm)	2	1분 평균 지중온도(30 c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i	지중온도 (50 cm)	2	1분 평균 지중온도(50 c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j	지중온도 (1.0 m)	2	1분 평균 지중온도(1.0 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k	지중온도 (1.5 m)	2	1분 평균 지중온도(1.5 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l	지중온도 (3.0 m)	2	1분 평균 지중온도(3.0 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m	지중온도 (5.0 m)	2	1분 평균 지중온도(5.0 m) 사용비트 → 10 ~ 0 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 (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2000 ((관측값 + 100) × 10)
	S-1	예비 1	2	예비 1
	S-2	예비 2	2	예비 2
S-3	예비 3	2	예비 3	
S-4	예비 4	2	예비 4	
S-5	예비 5	2	예비 5	
S-6	예비 6	2	예비 6	
S-7	예비 7	2	예비 7	
S-8	예비 8	2	예비 8	
S-9	예비 9	2	예비 9	
S-10	예비 10	2	예비 10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용 설명
상태 자료	X	데이터로거 전압상태	1	BIT 0 : DC입력전압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 : 배터리전압 → 0 : 정상, 1 : 비정상 BIT 2, 3 : AC 전압 → 00 : 110 V, 01 : 220 V, 11 : AC OFF
				BIT 4 : 데이터로거함 잠금상태 → 0 : 닫힘, 1 : 열림 BIT 5 : 예비 1 → 0 : 정상, 1 : 비정상 BIT 6 : 예비 2 → 0 : 정상, 1 : 비정상 BIT 7 : 예비 3 → 0 : 정상, 1 : 비정상
	Y	데이터로거 센서상태	2	BIT 0 : 풍향센서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 : 풍속센서 → 0 : 정상, 1 : 비정상 BIT 2 : 온도센서 → 0 : 정상, 1 : 비정상 BIT 3 : 강수유무 → 0 : 정상, 1 : 비정상 BIT 4 : 강수량센서 → 0 : 정상, 1 : 비정상 BIT 5 : 습도센서 → 0 : 정상, 1 : 비정상 BIT 6 : 기압센서 → 0 : 정상, 1 : 비정상 BIT 7 : 예비 1 → 0 : 정상, 1 : 비정상 BIT 8 : 예비 2 → 0 : 정상, 1 : 비정상 BIT 9 : 예비 3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0 : 예비 4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1 : 예비 5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2 : 예비 6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3 : 예비 7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4 : 예비 8 → 0 : 정상, 1 : 비정상 BIT 15 : FAN의 동작상태 → 0 : 정상, 1 : 비정상
Z				데이터로거 센서상태

다. 요소별 구조

(1) VII-1 : 필수 및 선택 관측 ( 91 Bytes )

A	B	C	D	E	F	G	H	I	J	K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필수 관측요소																								
a	b	c	d	e	f	g	h	i	j	k	l	m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X	Y
선택 관측요소																								
상태 자료																								

(2) VII-2 : 필수 관측 ( 45 Bytes )

A	B	C	D	E	F	G	H	I	J	K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X	Y
필수 관측요소																					상태 자료	

(3) VII-3 : 강수량 관측 (16 Bytes )

F	K	L1	L2	L3	L4	L5	X	Z
강수량 관측							상태자료	

2. 데이터로거 명령어 구분 : 29 BYTE

A	B	C	D	E	F	G	H
순서	내용		Bytes	내용 설명			
A	HEADER		2	FAFB (Hex)			
B	프로토콜 버전		1	1) 년 : 표현범위 → 0 ~ 99 (2000~2099년)			
			1	2) 월 : 표현범위 → 1 ~ 12			
			1	3) 일 : 표현범위 → 1 ~ 31			
C	년월일 시분초		1	1) 년 : 표현범위 → 0 ~ 99 (2000~2099년)			
			1	2) 월 : 표현범위 → 1 ~ 12			
			1	3) 일 : 표현범위 → 1 ~ 31			
			1	4) 시 : 표현범위 → 0 ~ 24			
			1	5) 분 : 표현범위 → 0 ~ 59			
			1	6) 초 : 표현범위 → 0 ~ 59			
D	비밀번호		2	PASSWD			
E	지점번호		2	ID			
F	명령어		10	※ 명령어 참조			
G	CHECK XOR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B,C,D,E,F 항을 XOR 한 값			
	CHECK SUM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B,C,D,E,F 항을 ADD 한 값			
H	END		2	FFFE(Hex)			

※ 명령어

구분	명령어	내용 설명
자료요구 명령	AI?	순간자료
	AB?	1분 자료 (최근 1분 자료 요구)
	AQ?	1분 과거 자료 (C항에 과거시간을 입력하여 과거자료요구)
상태 정보	AV?	데이터로거 버전
원격 제어	AR?	데이터로거 리셋
	AO?	전원리셋 또는 모뎀리셋 또는 적설센서 리셋
	AD?	지점번호 설정
	AT?	날짜, 시간 설정
	AW?	암호 설정
	AC?	저장데이터 삭제
(예) AI? : ?포함 3바이트 나머지 공간은 0x00을 채운다.		

3. 데이터로거 Version 명령응답 : 29 byte

A	B	C	D	E	F
순서	내용	Bytes	내용 설명		
A	HEADER	2	FAFB (Hex)		
B	프로토콜 버전	1	1) 년 : 표현범위 → 0 ~ 99 (2000~2099년)		
		1	2) 월 : 표현범위 → 1 ~ 12		
		1	3) 일 : 표현범위 → 1 ~ 31		
C	지점번호	2	ID		
D	내용	18	데이터로거 버전(예 "JD V01.01")		
E	CHECK XOR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B,C,D 항을 XOR 한 값		
	CHECK SUM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B,C,D 항을 ADD 한 값		
F	END	2	FFFE(Hex)		

4. 데이터로거 리셋, 지점번호 설정, 날짜시간 설정, 지점번호, 암호설정 등에 대한 명령응답 : 16 byte

A	B	C	D	E	F	G
순서	내용	Bytes	내용 설명			
A	HEADER	2	FAFB (Hex)			
B	프로토콜 버전	1	1) 년 : 표현범위 → 0 ~ 99 (2000~2099년)			
		1	2) 월 : 표현범위 → 1 ~ 12			
		1	3) 일 : 표현범위 → 1 ~ 31			
C	지점번호	2	ID			
D	명령어	1	R : 데이터로거 리셋			
			O : 전원리셋 또는 모뎀리셋 또는 적설센서 리셋			
			D : 지점번호 설정			
			T : 날짜, 시간 설정			
			W : 암호 설정			
C : 버퍼클리어						
E		4	"OKAY" 또는 "FAIL"			
F	CHECK XOR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B,C,D,E 항을 XOR 한 값			
	CHECK SUM	1	초기값을 '0'으로 하여 B,C,D,E 항을 ADD 한 값			
G	END	2	FFFE(Hex)			

5. 데이터로거(Data Logger)에서 기상실황판으로 전송하는 자료구조

○ 자료형태 : ASCII 코드형태로 기본 58 BYTE로 한다.

A(1)	B(7)	C(5)	D ~ M (44)	N(1)
시작문자	날짜	시간	관측자료	끝문자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용 설명
헤더	A		1	'02' hex STX(Start Of Text)
	날짜/시간	B YYMMDD	7	ID "A"를 포함 Text 7자리 YY : 년 2자리, MM : 월 2자리, DD : 일 2자리
C		시간 hhmm	5	ID "B"를 포함 Text 5자리 hh : 월 2자리, mm : 일 2자리
관측자료	D	풍향 ddd	4	ID "C"를 포함 Text 4자리 ddd : 000 ~ 360°
	E	풍속 sss	4	ID "D"를 포함 Text 4자리 sss : 000 ~ 750 %s(관측값 × 10)
	F	온도 nttt	5	ID "E"를 포함 Text 5자리 n : 부호 영하1, 영상0 ttt : 000 ~ 500 °C(관측값 × 10)
	G	오늘강수량 rrrr	5	ID "F"를 포함 Text 5자리 rrrr : 0000 ~ 9999 mm(관측값 × 10)
	H	어제강수량 rrrr	5	ID "G"를 포함 Text 5자리 rrrr : 0000 ~ 9999 mm(관측값 × 10)
	I	강수유무 d	2	ID "H"를 포함 Text 2자리 d : 유 1, 무 0
	J	기압 ppppp	6	ID "I"를 포함 Text 6자리 ppppp : 05000 ~ 11000 hPa (관측값 × 10)
	K	습도 hhh	4	ID "J"를 포함 Text 4자리 현재 습도 hhh : 000 ~ 100 %
	L	적설 nnnn	5	ID "K"를 포함 Text 5자리 현재 적설 nnn : 000 ~ 9999 cm(관측값 × 10)
	M	예비 1	4	
끝	N		1	'03' hex ETX(End Of Text)



[별표 6] <개정 2007.10.12>

부대장비의 표준규격(제12조관련)

부대장비	표준규격
전원공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공급장치의 입력전압은 AC 프리볼트 60 Hz, 출력전압은 DC 12 V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li> <li>○ AC 입력 단자에 보호용 스위치 및 서지보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li> </ul>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터리는 전원공급 중단 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80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12 V이어야 한다.</li> </ul>
낙뢰보호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뢰보호설비는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1024-1" 규격을 따른다.</li> </ul>
기상실황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측지점에서 실시간으로 기상실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기상실황관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형식과 표출방식은 관측기관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li> </ul>

[별표 7] <개정 2011.1.3>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제13조관련)

부대설비	설치 위치
측기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위치 : 관측장소</li> <li>○ 설치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면에서부터 10 m 이상</li> <li>※ 건물 옥상의 경우는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최소 7 m 이상의 높이에 설치</li> </ul> </li> <li>○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 : 3단 3각형(옆면 폭 40 cm), 지그재그 사다리식</li> <li>- 재질 : 알루미늄 또는 강도 높은 강철</li> <li>- 표면처리 : 백색 불소 도장 또는 아연도금</li> </ul> </li> <li>○ 측기탑 지지선 설치</li> <li>○ 콘크리트 기초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기탑용(콘크리트 타설, 케이블 인입관 매설)</li> <li>- 지선용 3개(콘크리트 타설, 앵커볼트형)</li> <li>※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 및 고정식 장대형은 제외한다.</li> </ul> </li> </ul>
데이터 로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은 측기탑과 별도로 구성하고, 옥상은 측기탑에 부착</li> </ul>
배터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로거함 반대쪽에 지면에서 약 0.5 m 높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배터리 함을 설치</li> </ul>
차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순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온도센서, 습도센서 차광용</li> <li>- 구조 및 재질 : 이중통풍식, 흰색, 섬유유리·플라스틱·금속</li> <li>- 통풍속도 : 4% ~ 6%</li> <li>- 모양 : 상단은 눈 쌓임 적게 함</li> <li>※ 자연통풍식의 경우에는 비늘모양의 구조</li> </ul> </li> </ul>
강수량계 바람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면에 바람막이의 지지봉 설치를 원칙</li> <li>※ 옥상 등의 경우에는 강수량계 몸통에 설치 함</li> </ul>
가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강수량계, 차광통 부착용</li> <li>○ 길이 : 3 m</li> <li>○ 설치높이 : 지면으로부터 1.5 m</li> <li>○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은 측기탑과 별도로 구성하여 데이터로거함 위에 부착</li> <li>- 옥상은 측기탑에 부착하여 데이터 로거함 위에 설치</li> </ul> </li> </ul>
피뢰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기탑 최상단에 설치</li> </ul>
접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선 지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li> </ul>



##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1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 일사, 일조는 자동관측한다.
2. 적설, 시정, 운고는 자동 또는 목적관측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 운량, 증발량 등의 기상요소는 목적관측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1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2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용, 저장, 관리, 교환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항
5. 기상측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한다.
2. 기상측기는 내구연수 경과 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③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한다.
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를 저장 및 관리한다.
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수신방식을 따른다.

④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따른다.
2.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기상관측업무의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3년에 24시간(사이버교육 포함) 이상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제2조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유지·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수리 또는 유지·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⑥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2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3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 고시 제2006-30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통신 송·수신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품질검사·분배의 일원화
2. 기상관측자료 수집·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
3. 기상관측자료 송·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
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

제4조(기상관측자료의 구조)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 고시 제2006-30호)(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

제5조(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는 자동관측 표준규격 제11조를 따라야 한다.

제6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방식) ①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수신한다.
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은 관측소에서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지방청·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한다.  
 ②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①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
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30분·1시간도 가능  
 ②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
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3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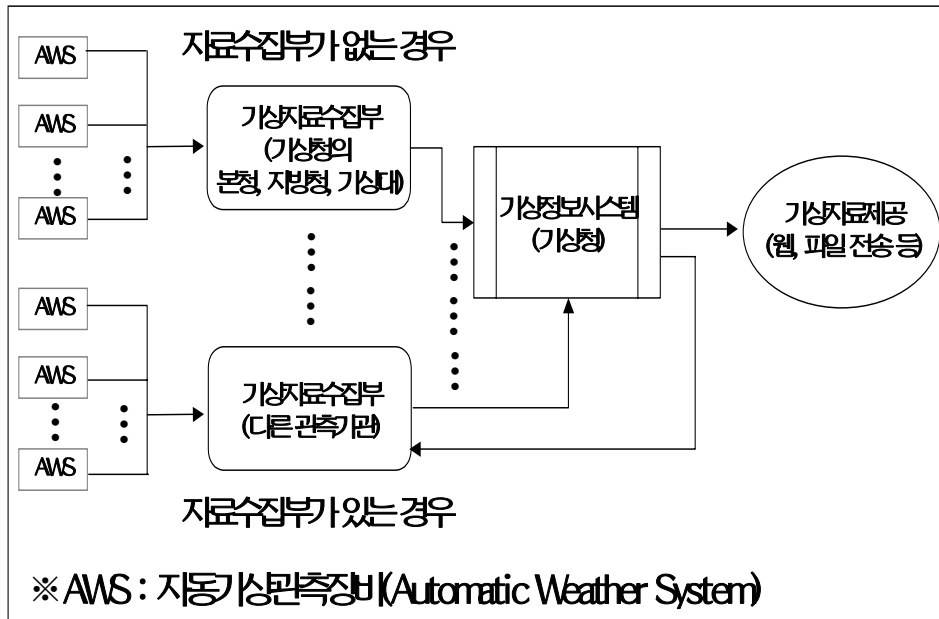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제7조관련)





##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4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09. 12. 23 기상청고시 제2009-3호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3>

제3조(기상측기별 설치기준) ①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②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3>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4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3호, 2009.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9.12.23>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제3조제2항관련)

1. 풍향·풍속계

- 가. 장애물의 영향이 없는 경우 지면에서 10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지면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1.3배 이상 또는 옥상 바닥 면에서 건물의 폭(width) 만큼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풍향·풍속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3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 온·습도계

- 가. 지면이 잔디로 조성된 백엽상 또는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인 경우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백엽상의 밑면은 지면에서 1.0~1.2 m 높이에 위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온·습도계는 백엽상 내부에서 지면으로부터 1.2~1.5 m 높이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차광통은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1.2~2.0 m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2.5~10 m/s의 통풍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옥상 설치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 라. 지면온도계와 초상온도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계 주위 30 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면과 잔디에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온·습도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습도센서는 습도센서에 묻을 수 있는 오염물의 영향과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얇은 금속보호막으로 보호해야 한다.

3. 강수량계

- 가. 강수량계 수수구의 높이는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강수량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수수구와 장애물 높이 차이의 최소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강수량계 주위에 바람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기압계

- 가. 대기와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며 견고한 설치대, 보호 장비 등을 갖추어 악기상, 심한 온도변화 및 바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데이터로거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데이터로거함의 설치 위치는 측기탑의 가로대 바로 밑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강수유무계

차광통이 위치한 곳의 반대편 가로대의 끝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일사·일조계

- 가.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매일 장비의 표면 청소와 정상가동 체크 등 관리가 용이한 곳, 5° 이상의 태양고도각 유지로 그림자가 일사·일조계에 드리워지지 않는 곳, 수평면 위로 하늘의 3 % 이상이 장애를 받지 않는 곳, 주변에 일사·일조 관측에 영향을 주는 흰색이나 반사가 강한 물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일사·일조계로부터 10m 이상의 이격거리에 데이터로거가 설치되어 있으면 관측 신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신호변환기를 일사·일조계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5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
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을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5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36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 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 고시 제2006-30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이 때 공차는 별표 2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6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제3조관련)

### 1. 온도계(유리제)

- 가. 온도계의 눈금은 굵기와 간격이 일정하고 모세관에 대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 나. 눈금은 작은 눈금과 큰 눈금이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새기고 그 굵기는 눈금 사이의 1/5 이하이어야 한다.
- 다. 눈금의 간격은 1/2 °C, 1/5 °C, 또는 1/10 °C 이어야 하며 0 °C나 10 °C 등의 주된 눈금은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라. 눈금 범위의 상·하단에 측정이 가능하도록 1.0 °C 이상의 가외눈금이 있어야 한다.
- 마. 최하단의 눈금선과 구부의 상단과의 최저 눈금선을 나타내는 양의 값이 -30 °C 이상일 경우에는 3 cm 이상, -30 °C 미만일 경우에는 5 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은기압계형 부착온도계는 2 cm 이상이면 된다.
- 바. 눈금선은 표면마찰 및 수조용액 등 환경영향을 받아도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사. 눈금판은 유백색 또는 식별하기 좋은 색으로 변질되지 않는 판을 사용해야 하며 눈금판이 붙어있지 않은 온도계는 눈금면의 뒤에 유백색 또는 식별하기 쉬운 색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아. 구부에 봉입해 있는 수은, 알코올에 불순물이 혼합되거나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자. 온도계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모세관의 내벽이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된다.
- 차. 내관은 눈금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똑바로 붙어 있어야 한다.
- 카. 곡관지중온도계는 구부의 중심에서부터 구부러진 부분까지의 길이는 측정 길이 보다 약 3 cm 길고 구부러진 각도는 약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용인 경우는 각각 약 2 cm 및 약 120°이면 된다.
- 타. 최저온도계는 45° 기울어지게 놓았을 때 부표가 움직여야 되고, 온도가 낮아졌을 때 부표는 알코올과 같이 내려가야 한다.
- 파. 검정점은 0 °C를 기준점으로 하여 5 °C 간격으로 한다.

### 2. 온도계(기계식)

- 가. 눈금의 간격은 1/10 °C, 1/2 °C, 1 °C로 되어 있어야 하며 0 °C나 10 °C 등의 주된 눈금은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수감부의 고정나사는 견고하여야 한다.
- 다. 수감부는 특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감부를 보호하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보호망과 수감부가 접촉되어 있으면 안 된다.
- 라. 수감부가 원활히 작동되고, 시도 조절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마. 기계식온도계의 지시는 온도변화에 따라 예민하여야 한다.
- 바. 자기펜은 시도의 변화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펜압은 기기 전체를 앞으로 약 30° 기울였을 때 펜이 지면에서 떨어질 정도면 된다.
- 사. 기록되는 값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아. 검정점은 0 °C를 기준점으로 하여 5 °C 간격으로 한다.

자. 자기지 상하단에 가외눈금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점의 최대 및 최소값의 진단 계 눈금에서 검정을 하여야 한다.

3. 온도계(전자식)

- 가. 전자식온도계의 센서는 백금·열전대 등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저항체의 저항소자와 단자를 접속하는 도선은 양질의 것으로 하고, 자기가열효과 또는 증발산화, 기타 이유로 온도측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다. 저항체의 지시계 및 기록계는 외부에서 유도되는 잡음전압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 이어야 한다.
- 라. 저항체는 보호관 또는 보호덮개가 있어야 한다.
- 마. 온도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 ℃ 이하이어야 한다.
- 바. 검정점은 0 ℃를 기준점으로 하여 5 ℃ 간격으로 한다.

4. 기압계(기계식)

- 가. 기압계의 지시값은 진동에 의한 변화가 적어야 한다.
- 나. 수은기압계는 수은 누출여부, 기포여부, 유리관의 흠을 조사하여야 한다.
- 다. 수은기압계의 눈금선은 0.1 mm 이하의 굵기로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하고 측정 눈금의 범위는 870~1050 hPa보다 넓어야 한다.
- 라. 각 부분의 고정나사, 조절나사에 이상이 없고 부착을 상하로 움직일 때 부착과 수은주의 수은면을 조절하는 나사 등의 동작이 양호하여야 한다.
- 마. 온도보정을 위한 부착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바. 수은조의 양피주머니는 부드러워야 한다.
- 사. 상아침의 오손여부와 상아침 끝이 수은면과 접촉한 것이 선명하게 판정할 수 있는 가를 조사한다.
- 아. 지시 및 자기기압계의 측정범위는 920~1040 hPa과 같거나 그보다 넓어야 하고 지시값이 눈금으로 표시되는 기압계의 눈금선의 굵기는 눈금간 간격의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자. 자기기압계의 경우에는 측정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차. 아네로이드기압계는 시도 조절장치가 있어야 한다.
- 카. 검정점은 950, 980, 1010, 1040 hPa이다.
- 타. 선박용 아네로이드형 지시기압계의 각부는 수감부의 받침부 등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자성체이어야 한다.
- 파. 측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동시켰을 때 시도의 변화가 검정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5. 기압계(전자식)

- 가. 전자식기압계는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기압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 hPa 이하이어야 한다.
- 다. 검정점은 800, 850, 900, 950, 980, 1010, 1040 hPa로 한다.

6. 통풍건습계

- 가. 건습구용으로 사용되는 2개의 유리제온도계는 동종동형이어야 한다.
- 나. 건습구용 온도계의 감온부는 보호관의 단독분리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다. 통풍기의 동작이 양호하여야 하며, 풍속이 2.5 m/s 이상이어야 한다.
- 라. 검정공차는 유리제온도계의 검정기준에 따른다.

7. 습도계(기계식)

- 가. 습도계 수감부는 습도에 대하여 예민하고 온도에 대하여 변화가 적어야 한다.
- 나. 수감부는 공기의 유통이 잘 되어 정확한 주위습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수감부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며, 탈 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라. 수감부에 모발을 사용할 경우에는 완전 탈지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수감부와 회전부 상호간에 마찰이 없어야 한다.
- 바. 습도계의 시도 범위는 0~100 %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의 눈금은 1 % 이하 단위로 그어져 있어야 한다.
- 사. 습도계는 시도 조절장치가 있어야 한다.
- 아. 습도계는 10 %나 20 % 등 중요한 눈금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자. 펜의 곡률과 자기지의 곡률이 일치하여야 한다.
- 차. 검정점은 30, 60, 90 %이다.

8. 습도계(전자식)

- 가. 전자식습도계는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표시 단위는 1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전자식습도계는 감습체를 덮는 방진필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다. 검정점은 30, 60, 90 %이다.

9. 풍향계

- 가. 재질은 내구성이 있고 가벼워야 하며 전기식일 경우에는 사용전원의 규격을 명시 하여야 한다.
- 나. 풍향지시계는 수감부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기계적이나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다. 풍향은 360°를 16방위(22.5° 간격)로 검정하여야 한다.
- 라. 풍향의 최소표시 단위는 1° 이내이어야 한다.
- 마. 전위차계(Potentiometer)식 풍향계는 오픈각이 5° 이내이어야 한다.
- 바. 풍향계의 기동은 풍속 1.0 m/s 이하이어야 한다.

10. 풍속계

- 가. 수감부의 재질은 내구성을 갖추고, 풍배 또는 풍차는 회전 시 바람에 의하여 그 형태가 변하지 않게 견고해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든지 동일한 풍속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측정범위, 풍정과외의 관계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풍정은 풍정식일 경우)

- 다. 풍속계의 기동은 풍속 1.0 m/s 이하이어야 한다.
  - 라. 검정점은 기동풍속, 3, 5, 10, 20, 30, 40, 50, 60, 70 m/s이다.
  - 마. 풍속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 m/s 이하이어야 한다.
  - 바. 풍속은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지시 또는 표출하여야 한다.
11. 일조계(졸단, 바이메탈, 회전식)
- 가. 졸단일조계는 황동계로서 진한 흑색으로 착색 또는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졸단일조계의 차광판은 원통과 평행하여야 한다.
  - 다. 졸단일조계 각도판의 조절범위는 0~60°이어야 한다.
  - 라. 바이메탈·회전식일조계는 수감부가 변질되지 않도록 밀봉유리 또는 통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 마. 바이메탈·회전식일조계는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바이메탈·회전식일조계의 검정점은 120 W/m<sup>2</sup>로 한다.
12. 일조계(캠벨)
- 가. 유리구의 중심과 반원형의 홈(이하 “홈”이라 한다)의 중심선이 일치하여야 한다.
  - 나. 일조지를 홈에 끼울 때 그 중심선을 포함한 지면에 수직한 평면은 유리구의 중심을 통해 천구의 적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 다. 유리구로 통과한 광선의 초점거리는 홈의 중심에서 일조지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한다.
  - 라. 홈을 대칭적으로 나누는 수직면은 유리구의 중심을 통하여 자오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 바. 일조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시간으로 한다.
13. 일사계(전천)
- 가. 수감부의 보호막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수감부 보호막의 내부는 방수·방습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수감부에는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라. 감도정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일사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 W/m<sup>2</sup>이하로 한다.
14. 일사계(직달)
- 가. 수감부, 태양추적부 및 기록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수감부는 수광면을 바르게 조절하기 위한 조준기가 붙어 있어야 하며 감도정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수감부는 백색도장 또는 은색도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라. 태양추적부에는 수준기, 수평조절나사, 위도눈금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일사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 W/m<sup>2</sup>이하로 한다.

15. 강수량계(기계식)
- 가. 수수기의 구경, 최대측정우량 또는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다. 접합부의 누수가 없어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테두리 내경이 200 mm인 경우 기차는 ±3 % 이내 이어야 하며, 그 외의 측기는 200 mm를 기준으로 한 비율로 검사한다.
  - 바. 자기우량계 및 싸이폰식우량계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사. 자기우량계의 저수통에 물을 넣어 누수여부를 검사한다.
  - 아. 싸이폰식우량계는 싸이폰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고, 배수시간은 13초 이내이어야 한다.
  - 자. 우량승의 재료는 유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차. 우량승의 눈금은 0.1 mm마다 새겨져 있어야 하고 상단에 0.1 mm의 가외눈금과 수수기의 직경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카. 우량승의 눈금선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고 기차는 ±0.02 mm 이내이어야 한다.
  - 타. 저울형 설량계 수수구의 테두리는 착설이 잘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파. 저울형 자기설량계의 한 눈금이 나타내는 값은 5 mm 이하이어야 한다.
  - 하. 저울형 자기설량계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며, 펜의 배율조정장치 및 시도조정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6. 강수량계(전자식)
- 가. 수수기의 구경과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다. 접합부의 누수가 없어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7. 증발계(소형)
- 가. 재질은 청동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로 한다.
  - 나. 테두리는 청동의 주물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두꺼운 판을 용접해야 하며 구경은 원형이어야 한다.
  - 다.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라. 배수구는 밑부분에서 6 cm 정도에 있어야 하며 각도는 하향이어야 한다.
  - 마. 배수구를 밀봉한 후 24시간 물을 가득 채워 누수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바. 증발량이 디지털값 등으로 표출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이 정확하여야 하며, 즉시 가감량이 표출되어야 한다.

18. 증발계(대형)

- 가. 재질은 아연도금 철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되어 만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외면은 백색으로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부칙은 원활하게 상하로 작동하여야 한다.
- 다. 부칙침의 끝부분은 가능한 한 뾰족하여 관측에 용이하여야 한다.
- 라. 수위측정기를 받쳐주는 금속류는 청동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 마.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 m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차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 바. 증발량이 디지털값 등으로 표출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이 정확하여야 하며, 즉시 가감량이 표출되어야 한다.

19. 데이터 로거(Data Logger)

- 가. 시험기 또는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직선성 등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방수 및 방습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주변 고압선 등으로부터 유도전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차폐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현지 출장 검정

- 가. 기상측기별 기차, 교차, 극차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 나. 온도계(전자식)의 경우 검정점은 3점(-10, 0, +20 ℃)으로 한다.
- 다. 기압계(전자식), 습도계(전자식)의 경우 현지실황 3회를 비교 검정한다.
- 라. 풍향계(전자식)의 경우 360°를 8방위(45° 간격)로 검정한다.
- 마. 풍속계(전자식)의 경우 현지의 기상상태에 따라 검정범위(풍속 10 m/s 미만 또는 10 m/s 이상)를 선택하여 현지실황 3회를 비교 검정한다.

[별표 2]

기상측기의 공차(제3조관련)

1. 유리제온도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한 눈금의 값이 1/5 ℃ 이하의 유리제온도계(3에서 6까지 표시한 종류는 제외)	-30 ℃ 이상 -20 ℃ 미만	±0.5	0.3	-
	-20 ℃ 이상 +50 ℃까지	±0.3	0.3	-
② 한 눈금의 값이 1/2 ℃인 유리제 온도계	-30 ℃ 이상 -20 ℃ 미만	±1.0	0.5	-
	-20 ℃ 이상 +50 ℃까지	±0.5	0.3	-
③ 최고온도계(한 눈금이 1/5 ℃ 이하)	-20 ℃ 이상 0 ℃ 미만	±0.5	0.3	-
	0 ℃ 이상 +50 ℃까지	±0.3	0.3	-
④ 최저온도계(한 눈금이 1/5 ℃ 이하)	-40 ℃ 이상 -20 ℃ 미만	±0.5	0.3	-
	-20 ℃ 이상 +30 ℃까지	±0.3	0.3	-

2. 유리제온도계 이외의 온도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기계식	전시도	±1.0	1.0	-
② 전자식	-40 ℃ 이상 +60 ℃까지	±0.3	0.3	-

3. 기압계 공차

종 류		기 차(hPa)	교 차(hPa)	극 차(hPa)
① 기계식	액주형	±0.5	-	0.5
	지시형	±0.7	-	0.7
	자기형	±1.3	-	0.7
② 전자식		±0.5	-	0.5



4. 습도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기계식	±5	-	7
② 전자식	±3	-	5

5. 풍향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풍향계	±5	-	-

6. 풍속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기계식	10 m/s 미만	±1.0 m/s	-	-
	10~70 m/s	±10 %	-	-
② 전자식, 초음파식	10 m/s 미만	±0.5 m/s	-	-
	10~70 m/s	±5 %	-	-

7. 일조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줄단일조계	원통의 내경 : 64 mm	±0.2 mm	-	-
	원통의 깊이 : 145 mm	±5 mm	-	-
	채광공의 크기 : 0.5 mm	±0.1 mm	-	-
② 바이메탈일조계, 회전식일조계	일조점 : 120 W/m <sup>2</sup>	±5 %	-	-
③ 캠벨일조계	유리구의 직경 : 100 mm	±0.3 mm	-	-

8. 일사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전천일사계	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50 W/m <sup>2</sup>	-	-
② 직달일사계	순간직달일사량 30회 평균값 ±50 W/m <sup>2</sup>	-	-

9. 강수량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강수량계	검정범위 : 20 mm	±5 %	-	-

10. 증발계 공차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① 소형증발계	테두리내경 : 200 mm ± 0.6 mm	-	-
	깊 이 : 100 mm ± 3.0 mm	-	-
② 대형증발계	테두리내경 : 1200 mm ± 6.0 mm	-	-
	깊 이 : 250 mm ± 10.0 mm	-	-

11. 현지출장 검정 시 공차

종 류	검정범위(검정점)	기 차	교차	극차
① 온도계(전자식)	3점(-10, 0, +20 °C)	±0.5 °C	±0.5 °C	-
② 기압계(전자식)	현지실황 : 3회	±0.7 hPa	-	0.7 hPa
③ 습도계(전자식)	현지실황 : 3회	±5 %	-	7 %
④ 풍향계	8방위	±5°	-	-
⑤ 풍속계 ( 전자식, 초음파식)	현지실황(10 m/s 미만) : 3회	±1.0 m/s	-	-
	현지실황(10 m/s 이상) : 3회	±10 %	-	-
⑥ 일사계	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50 W/m <sup>2</sup>	-	-
⑦ 강수량계	20 mm	±5 %	-	-

※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상측기의 경우 1~10의 기상측기별 공차를 적용한다.

※ 현지 출장 검정은 이미 검정을 받거나 면제된 기상측기의 이전 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 시에 실시할 수 있다.



##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 정 2006. 12. 1 기상청고시 제2006-37호  
 일부개정 2008. 8. 22 기상청고시 제2008-1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1. 1. 3 기상청고시 제2010-4호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확한 고층기상관측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3>

1. '고층기상관측장비'란 고층 대기의 기온, 기압(또는 고도), 습도(또는 이슬점온도),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1.3>
2. '레원존데 관측장비'란 라디오존데, 지상점검장치, 비양 기구, 낙하산, 열레, 지상수신장치, 자료분석장치 등으로 구성된 고층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1.3>
3. '라디오존데'라 함은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고층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고 무선송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관측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1.1.3>
4. '무선송수신장치'란 항행보조시스템의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그 무선신호와 함께 관측센서에서 관측된 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3>
5. '지상수신장치'란 지상에서 라디오존데의 전파 신호를 추적하고 수신하여 원시 관측 자료를 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3>
6. '자료분석장치'란 지상수신장치로부터 수신된 원시 관측자료를 처리하여 그래픽과 문·숫자로 표출하며, 일정한 품질검사를 수행한 후에 고층기상관측전문을 작성·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3>
7. '지상점검장치'란 지상에서 라디오존데의 정상 작동 여부와 라디오존데 관측센서의 성능을 점검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3>
8. '비양 기구'란 라디오존데를 매달고 대기 상공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대형 고무풍선을 말한다. <개정 2011.1.3>
9. '낙하산'이란 비양 기구가 터진 후에 라디오존데를 서서히 하강시킬 수 있는 완강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3>
10. '열레'란 라디오존데와 낙하산을 연결하는 줄을 감아놓은 틀을 말한다. <개정

2011.1.3>

11. '안테나'란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3>
12. 'LORAN-C 방식'이란 항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LORAN-C 지상 무선국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수신하고 그 위치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3>
13. 'GPS 방식'이란 항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GPS 위성으로부터 라디오존데의 공간정보를 수신하고 그 위치 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3>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는 레원존데 관측장비로 한정한다. <개정 2011.1.3>

[전문개정 2008.8.22]

[제목개정 2011.1.3]

제4조 (적용 범위) ①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22, 2011.1.3>

② 삭제 <2008.8.22>

[제목개정 2011.1.3]

제5조 (적용 기준)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다음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8.8.22, 2011.1.3>

1.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제반 규정
2.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을 유지

### 제2장 레원존데 관측장비의 규격

제6조 (라디오존데의 관측센서) ①라디오존데의 기압, 기온, 습도 등의 센서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8.8.22>

관측센서	규 격
기압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측정범위 : 1050 hPa ~ 5 hPa</li> <li>o 분 해 능 : 0.1 hPa 이하</li> <li>o 불 확 도 : ±1 hPa 이내</li> <li>o 측정주기 : 1 Hz 이하</li> </ul>
기온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측정범위 : 50℃~ -90℃</li> <li>o 분 해 능 : 0.1 ℃ 이하</li> <li>o 불 확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 ~ 100 hPa : ±0.5 ℃ 이내</li> <li>- 100 hPa ~ 5 hPa : ±1 ℃ 이내</li> </ul> </li> <li>o 측정주기 : 1 Hz 이하</li> </ul>



제12조 (낙하산) ①낙하산의 총중량은 110 g 이하이고, 지상 부근에서 낙하속도는 5 m/s 이하여야 한다.

②낙하산은 낙하할 때에 쉽게 잘 펼쳐져야 하고, 얼지 않도록 낙하산의 외부 표면이 방수 처리되고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1.1.3>

제13조 (엘레) ①엘레의 줄 길이는 고층기상관측용이 20m 이상, 고층기후관측용이 30 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3>

②엘레의 줄은 내수성과 내한성을 가진 플라스틱 재질로써, 라디오존데를 매단 상태에서 상승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1.1.3>

제14조 (지상점검장치) ①지상점검장치는 라디오존데의 기압(또는 고도), 기온 및 습도 센서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바로잡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3>

②지상점검장치에서 수집된 자료는 지상점검장치 자체 또는 자료분석장치에 저장·표출되어야 한다.

제15조 (지상수신장치) ①지상수신장치는 라디오존데의 무선신호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지상수신장치는 고도별로 기압(또는 고도),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의 관측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지상수신장치는 바람 관측자료 손실에 대한 보상 필터링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지상수신장치는 수신된 원시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GPS 레인존데 관측장비의 지상수신장치는 건물 실내에서 라디오존데의 GPS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자료분석장치) ①자료분석장치는 지상수신장치와 연결되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디오존데의 작동 상태와 관측자료를 그래픽으로 표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자료분석장치는 각 관측요소를 다음과 같은 연직 고도 분해능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관측 요소	연직 고도 분해능
기압	0.1 hPa 이하
기온	○ 지상 ~ 30 km : 0.1 km 이하 ○ 30 km 초과 : 0.5 km 이하
습도	○ 지상 ~ 5 km : 0.05 km 이하 ○ 5 km ~ 대류권계면 : 0.1 km 이하
풍속·풍향	○ 지상 ~ 대류권계면 : 0.05 km 이하 ○ 성층권 내 : 0.25 km 이하

③자료분석장치는 산출된 관측값을 세계기상기구(WMO)가 지정한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전문으로 자동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8.8.22>

④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 전문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들 전문들은 현재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코드별 지침(Manual On Code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1.1.3>

1. TEMP FM35-XI
2. PILOT FM32-XI

3. CLIMAT TEMP FM75-XII

4. BUFR 3'09'052(for TEMP data)

5. BUFR 3'09'050(for pressure based PILOTdata)

6. BUFR 3'09'051(for height based PILOT data)

7. BUFR 3'09'054(for CLIMAT TEMP data)

⑤자료분석장치는 자동으로 작성된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전문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자료분석장치는 수신된 원시 관측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직일치성 검사 : 고도별 기온과 기압을 이용한 연직 기온감률의 한계 검사
2. 정역확일치성 검사 : 고도별 고도와 기온의 정역확적인 관계 검사
3. 연직바람시어 검사 : 인접한 두 고도의 풍향과 풍속에 대한 연직시어의 한계 검사
4. 표준등압면과 유의고도의 일치성 검사 : 표준등압면과 인접한 유의고도간의 관측요소에 대한 한계 검사

제17조 (안테나) 안테나는 무선신호를 추적하는 UHF 안테나와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안테나로 구성되며, 다음의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1.1.3>

구분	규격
UHF 안테나	○ 주파수 범위 : 400.15 MHz ~ 406 MHz ○ 라디오존데 신호 자동 추적
GPS 안테나	○ GPS 위성으로부터 C/A코드 신호 수신 ○ 저잡음 증폭기 설치 ○ 밴드패스 필터 기능

제18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7호, 2006.12.1>**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8-19호, 2008.8.22>**

이 고시는 2008. 8.22.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0-4호, 201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 정 2006. 12. 1 기상청고시 제2006-38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타고시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확한 해양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관측장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관측장비’라 함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해양기상관측부이’라 함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라 함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격의 적용 범위는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해양기상관측장비의 규격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기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① 해양기상관측부이와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는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선박에 설치된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는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요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제시된 관측요소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06-30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 ①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는 관측된 자료를 수집·처리·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④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에 제시된 방법으로 처리하여 매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자료구조) ① 자료구조는 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② 자료구조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부이본체) ① 부이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몸체, 각종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부착하는 상부구조물, 계류장치를 연결하는 하부구조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이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5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계류장치) ① 계류장치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② 계류장치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6-38호, 2006.12.1>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8.24>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측센서의 규격(제5조제2항제2호 관련)

관측센서	규격	비고
온도계 (수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방식 : 전기저항 또는 전기전압</li> <li>○ 측정범위 : -2 ℃ ~ +40 ℃</li> <li>○ 불확도 : ±0.1 ℃ 이내</li> </ul>	
파고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의파고 : 0 m ~ 15 m</li> <li>· 파주기 : 3 초 ~ 18 초</li> </ul> </li> <li>○ 불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의파고 : ±0.5 m 또는 ±10 % 이내</li> <li>· 파주기 : ±1.0 초 이내</li> </ul> </li> </ul>	

[별표 2]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의 규격(제6조제3항 관련)

구분	규격	비고
메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메모리 : 8 KB 이상</li> <li>○ 주 메모리 : 128 KB 이상</li> <li>○ 자료저장 메모리 : 1 MB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필요에 따라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li> </ul>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이상(Differential 채널 5개 이상 포함)</li> <li>- 전압분해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ngle : 입력전압의 1/15000배 이하</li> <li>• Differential : 입력전압의 1/30000배 이하</li> </ul> </li> <li>- 불확도 : 입력전압의 1/1000배 이하</li> </ul> </li> <li>○ 디지털 채널 : 8개 이상</li> <li>○ 주파수 채널 : 2개 이상</li> <li>○ A/D bit : 12 bit 이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페이스 : RS232C, RS422, RS485 포트</li> <li>○ 운용환경 : 기온 -40 ℃ ~ +50 ℃</li> </ul>	



[별표 3]

자료처리의 규격(제6조제4항 관련)

관측 요소	자료처리의 규격
기온 기압 습도 수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단위 : 0.1 °C(기온), 0.1 hPa(기압), 1 %(습도), 0.1 °C(수온)</li> <li>○ 샘플링 간격 : 10초</li> <li>○ 관측시간 : 매 정시 10분 전부터 정시까지</li> <li>○ 자료처리 시간간격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개 자료를 평균하여 정시자료를 산출한다.</li> </ul> </li> </ul>
풍향 풍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단위 : 0.1 ‰(풍속), 1°(풍향)</li> <li>○ 샘플링 간격 : 1초</li> <li>○ 관측시간 : 매 정시 10분 전부터 정시까지</li> <li>○ 자료처리 시간간격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1초 간격으로 3초 동안 3개의 샘플링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간격으로 이동 평균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li> <li>-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0개 풍향·풍속자료를 벡터평균하여 정시자료를 산출한다.</li> <li>-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0개 풍속자료를 비교하여 최대값과 그 때의 풍향을 1시간 최대순간풍향·풍속으로 산출한다.</li> </ul> </li> </ul>
유의 파고 파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단위: 0.1 m(파고), 0.1 초(주기)</li> <li>○ 샘플링 간격 : 1초 이하</li> <li>○ 관측자료 수 : 512개 이상으로 한다. 단, <math>512 \times 2^n (n=0,1,2,...)</math>으로 증대</li> <li>○ 관측시간 : 관측자료 수와 샘플링 간격을 고려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 1024개 자료를 관측할 경우 8.533분(=1024×0.5초/60초) 전부터 정시까지</li> </ul> </li> <li>○ 유의파고와 파주기는 해수면의 변위를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 분석하여 산출한다.                             <math display="block">\text{유의파고} = 4\sqrt{m_0}</math> <math display="block">\text{파주기} = \sqrt{\frac{m_0}{m_2}}</math> <math display="block">m_0 = \int_0^\infty E(f)df, m_2 = \int_0^\infty f^2 E(f)df</math>                             f : 주파수                              E(f) : 해수면의 변위를 스펙트럼 분석으로 구한 주파수별 분산밀도                         </li> </ul>

[별표 4]

자료구조의 규격(제7조제2항 관련)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 용 설 명	비고
관측 시간	ID	장비ID	3	장비 ID 사용비트 → 18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524287(이진 코드) 표현범위 → 10000 ~ 524287	
	B	날 짜	3	1) 년 : 사용비트 → 23 ~ 12번 비트 유효범위 → 0 ~ 4095(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4000 2) 월 : 사용비트 → 11 ~ 8번 비트 유효범위 → 0 ~ 15(이진 코드) 표현범위 → 1 ~ 12 3) 일 : 사용비트 → 4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31(이진 코드) 표현범위 → 1 ~ 31	
	C	시 간	3	1) 시 : 사용비트 → 23 ~ 19번 비트 유효범위 → 0 ~ 31(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23 2) 분 : 사용비트 → 13 ~ 8번 비트 유효범위 → 0 ~ 63(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59 3) 초 : 사용비트 → 5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63(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59	
관측 위치	D	위 도	4	1) 도 : 사용비트 → 31 ~ 24번 비트 유효범위 → 0 ~ 255(이진 코드) 표현범위 → 10 ~ 190(관측값 + 100) 2) 분 : 사용비트 → 19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48575(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599999(관측값×1000)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 용 설 명	비고
	E	경도	4	1) 도 : 사용비트 → 31 ~ 23번 비트 유효범위 → 0 ~ 511(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359 2) 분 : 사용비트 → 19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48575(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599999(관측값×10000)	
관측 요소	F	기온	2	기온 사용비트 → 10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 ~ 1600((관측값 + 100) × 10)	
	G-1	풍향	2	풍향1 사용비트 → 8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511(이진 코드) 표현범위 → 1 ~ 360	
	G-2	풍속	2	풍속1 사용비트 → 9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23(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1000(관측값 × 10)	
	G-3	최 순 풍 향	2	순간최대 풍향1 사용비트 → 8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511(이진 코드) 표현범위 → 1 ~ 360	
	G-4	최 순 풍 속	2	순간최대 풍속1 사용비트 → 9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23(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1000(관측값 × 10)	

구분	분류	내용	바이트수	내 용 설 명	비고
	H	기압	2	기압 사용비트 → 13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6383(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0 ~ 11000(관측값 × 10)	
	I	습도	1	습도 사용비트 → 6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27(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100	
	J-1	유 의 파 고	2	유의파고 사용비트 → 8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511(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500(관측값 × 10)	
	J-2	파주기	2	파주기 사용비트 → 8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511(이진 코드) 표현범위 → 0 ~ 333(관측값 × 10)	
	K	수온	2	수온 사용비트 → 10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2047(이진 코드) 표현범위 → 500~1600((관측값 + 100) × 10)	
예비	L	예비		관측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관측한 자료나 관측장비의 상태자료 등을 기록	
끝 표시	M	자료의 끝 표시	3	자료의 끝 표시 : "999999" 사용비트 → 19 ~ 0번 비트 유효범위 → 0 ~ 1048575(이진 코드) 표 현 값 → 999999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

제 정 2006. 12. 29 기상청고시 제2006-39호  
일부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2호

1. 법인명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정 2012.8.23>
2. 대표자(성명) : 박광준 <개정 2012.8.23>
3.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개정 2012.5.23>
5. 지정사항 : 기상측기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06년12월29일
7. 업무개시일 : 2007년 7 월 1일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2-2호, 2012.8.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 정 2013. 4. 17 기상청고시 제2013-1호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 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3. 위탁 업무
  -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고층, 해양, 항공, 지진, 레이더, 낙뢰) 구매·유지보수
  - 나. 기상관측표준화사업
  - 다. 해양기상기지사업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 정 2009. 9. 1. 기상청고시 제2009-2호  
 일부개정 2010. 12. 17. 기상청고시 제2010-3호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고시 제201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제2조(참여기관)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한국수력원자력(주)
11.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통해 가입한 기관

[제목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1.>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21.>

-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관리관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 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자는 위임장에 기록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0.12.17]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5월과 11월 개최를 원칙으로 함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2013.11.21.>
- 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10.12.17]

제6조(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심의 의결서와 위원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0.12.17]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 안건의 사전검토, 의견조율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실무협의회 구성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④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이유, 개최시기 및 장소, 구성원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전면개정 2010.12.17]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2.17]

제10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7>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09-2호, 2009.9.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0-3호, 2010.1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3-3호, 2013.11.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원 변경(제5조제2항 관련)

구분	부 서	직 책	이 름	연락처	E-mail
전임자	○○○○○	◇◇◇◇◇◇	홍길동	000-0000-0000	aaa@bbb.com
후임자	□□□□□	△△△△△	이순신	111-1111-1111	ddd@eee.net



### 협의회 위원 추천서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우리 기관에서는 상기 직원을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결과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등을 위한 법정기구로 설치·운영되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직인)

### 위임장

#### 1. 위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2. 본인(상기인)은 아래의 수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가. 수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나. 위임내용: 「제○차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권한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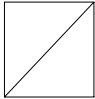
위임자 성 명 : (인)  
수임자 성 명 : (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12.17>

발의안건 제출서(제6조제3항 관련)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 회)	

안 건 명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제 출 자	□□□ □□□□□ 홍길동
제출년월일	20△△. △△. △△.

1. 심의 주문
  - △△법 제△조△항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
  
3. 주요 내용
  - ……
  - ……
  - ……
  - ……

협의회 위원 심의서(제6조제2항 관련)

(제 ○호 안건)

제목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의견 :

.....

.....

.....

.....

.....

.....

.....

.....

.....

.....

20    년    월    일

위원	홍길동	(서명)
----	-----	------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2항 관련)

제△차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의결서

(제 ○호 안건)

제목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종합의견 :

.....

.....

.....

.....

.....

.....

.....

.....

.....

.....

20    년    월    일

위원장	홍길동	(서명)
-----	-----	------



##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 정 2010. 1. 4 기상청고시 제2009-4호  
일부개정 2012. 12. 31 기상청고시 제2012-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회의 공유 대상 지진관측소의 지진 관측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관측장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거나, 인공적 원인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2. “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3. “가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4.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처리장치)”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지진기록계를 말한다.
5. “지진 관측장비”란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6. “부대장비”란 지진 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7. “지진관측소”란 지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처리장치, 부대장비 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8. “지진관측망”이란 지진 관측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진관측소를 연결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자료구조”란 지진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11. “시각동기화”란 지진관측소의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 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13. “이벤트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이라고 감지한 일정시간 분량의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
14. “이벤트 감지정보”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이라고 감지한 내용을 말한다.
15.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란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한 지진 관

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해 설정된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정보의 자료구조를 말한다.

16. “자료전송·통신장비”란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소에서 수신하거나 지진 관측장비의 상태를 원격 점검 할 수 있는 전송·통신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지진 관측장비 성능·규격의 적용대상은 지진관측(「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일체이다.

제4조(적용 기준)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 제2장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5조(관측센서) ①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광대역 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단주기 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가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자료 수집·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연속 관측자료, 이벤트 관측자료, 이벤트 감지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료 수집·처리장치는 자체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자료 수집·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제된 경우 통신장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 ③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성능·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제7조(시각동기화) 지진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시각동기화하여야 한다.

제8조(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① 지진관측소를 신설할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 제3장 부대장비의 기준

제9조(자료전송·통신장비) ①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지진 관측장비가 지진 관측자료를 다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8시간 이상 지진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낙뢰보호설비) ① 낙뢰로부터 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지진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지진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

제12조(유지관리) ① 지진 관측장비의 내구연한은 관측목적과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연간 95 % 이상의 자료수집율(지진 관측장비, 부대장비 포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진관측소당 분기별 자료수집율에 대한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장비의 변경 또는 관측 종료 시 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 공유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기상청고시 2009-4호, 2010.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2-3호, 2012.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대역 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제5조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광대역 속도지진계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주파수 영역	120 초 ~ 4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반응을 유지하여야 함
	동적범위	130 dB 이상 (지반속도 ± 13 mm/s 이상까지 견딜 것)
	민감도(Sensitivity)	1,000 ~ 20,000 Vs/m 범위 이내
	센서 신호출력	출력 전압이 ± 10 V 이상으로 자료 수집·처리 장치의 최대 입력 전압 이내여야 함
	검증(Calibration)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센서 자동 중심	3축 성분의 중심축 위치를 자동으로 중앙에 위치하여야 함
	소비전력	2.0 W 이하
	외장	방수 기능 및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레벨이 포함되어야 함

[별표 2]

단주기 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제5조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단주기 속도지진계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주파수 영역	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반응을 유지하여야 함
	고유주기	1 초
	형태	코일 이동형 (속도형)
	동적범위	125 dB 이상 (1 ~ 50 Hz)
	민감도(Sensitivity)	300 Vs/m 이상
	감쇠율(Damping)	전자기형태(Electromagnetic type), 60 ~ 70 %
	센서 신호출력	출력 전압이 자료 수집·처리 장치의 최대 입력 전압 이내여야 함
	검증(Calibration)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소비전력	2.0 W 이하
	외장	방수 기능 및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레벨이 포함되어야 함

[별표 3]

가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제5조 관련)

구분	항목	성능 및 규격
가속도지진계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주파수 영역	주파수 영역은 DC ~ 50 Hz 이상 이어야 함 0.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반응을 유지하여야 함
	동적범위	120 dB 이상 (DC ~ 50 Hz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범위(Full Scale)	± 2 g, ± 1.5 g, ± 1.0 g, ± 0.5 g 등 측정범위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여야 함
	출력전압 선형비	전체범위(Full Scale)의 0.1 % 이내이고, 지반운동 크기의 왜곡현상을 방지하여야 함
	성분간 감도오차	1 % 이내, 정확한 벡터(VECTOR) 성분을 유추 가능하여야 함
	감쇠율	60 ~ 70 %
	검증(Calibration)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센서 신호출력	출력 전압이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최대 입력 전압 이내여야 함 지진응답계측의 포화를 방지하여야 함
	출력방식	신호케이블의 길이와 종류에 따라 필요시 differential 선택이 가능하여야 함
	외장	방수 기능 및 산화피막 처리, 전기적 차폐기능, 높이 및 수평 조절기능, 지반에 고정 가능

[별표 4]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의 성능·규격(제6조 관련)

구분	항목	성능 및 규격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동적범위	관측센서의 동적 범위 이상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AD Converter)	24-bit 이상
	자료취득	동일 시스템에서 동시에 다중 샘플링(200 회/초, 100 회/초, 20 회/초, 1 회/초 등)이 가능하여야 함 샘플 횟수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샘플링 자료 패킷 통신 없이 고차 샘플링에서 저차 샘플링이 실시간 가능하여야 함
	센서 검증	관측센서의 검증코일을 이용한 센서 응답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멀티태스킹,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함
	연속 관측자료	최소 7일 이상 연속 자료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이벤트 관측자료	이벤트 트리거(Trigger)는 STA/LTA 또는 Threshold가 가능하여야 함 이벤트 트리거(Trigger) 작동시점을 기준으로 30 초 전부터 60 초 이상까지의 기록을 저장 하여야 함
	이벤트 감지정보	트리거(Trigger) 모드 시 감지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여야 함
	시각오차	5 ms 이내(GPS 보정 가능)
	실시간 자료 전송	다중샘플링(100 회/초, 20 회/초, 1 회/초 등) 자료를 연속으로 전송 가능하여야 함 특정 샘플링 자료는 압축 없이 매초 마다 전송 가능하여야 함
	매초 지진동 정보 전송	20 회/초 샘플자료로부터 매초 당 최대, 최소, 평균 값 패킷을 3 초 이내 여러 곳에 동시 전송 가능하여야 함
	자료저장 형식	범용 자료구조 형식으로 다음 중 하나를 지원하여야 함 : mini-SEED, SAC, GCF, SEG-Y, GSMS, CD1.0, CD1.1 (단, 위의 형식이 아닐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통신 방식	TCP/IP 통신 및 시리얼 통신(RS-232C 등)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외장	방수 기능 및 내장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합체여야 함



[별표 5]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제8조 관련)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 SITE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 SENSOR

항 목	자료형 (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ondate	int(4)	관측 개시일(julian Date)
offdate	int(4)	관측 종료일(julian Date)
lat	float(4)	위도
lon	float(4)	경도
elev	float(4)	고도
staname	char(50)	관측소 이름
statype	char(4)	관측소 형식
refsta	char(6)	참조 관측소(배열식인 경우)
dnorth	float(4)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북방위각
deast	float(4)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동방위각

항 목	자료형 (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chan	char(8)	채널 코드
time	float(4)	관측 개시시간(epoch time )
endtime	float(4)	관측 종료시간(epoch time)
inid	int(4)	장비 id
chanid	int(4)	채널 id
jdate	int(4)	관측 개시일(julian date)
calratio	float(4)	검증(calibration)
calper	float(4)	검증주기(calibration period)
tshift	float(4)	자료처리시간 보정치 (correction of data processing time)
instant	char(1)	불연속/연속 스냅샷 (discrete/continuing snapshot)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 채널」 SITECHAN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특성」 INSTRUMENT

항 목	자료형 (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chan	char(8)	채널 코드
ondate	int(4)	관측 시작일(julian date)
chanid	int(4)	채널 id
offdate	int(4)	관측 종료일(julian date)
ctype	char(4)	채널 형식
edepth	float(4)	설치 깊이
hang	float(4)	해당 지진계의 수평각
vang	float(4)	해당 지진계의 수직각
descrip	char(50)	채널 설명

항 목	자료형 (길이)	설 명
inid	int(4)	장비 id
insname	char(50)	장비명
instype	char(6)	장비 타입
band	char(1)	주파수 영역
digital	char(1)	디지털 장비 여부
samprate	float(4)	샘플링 비율(sample rate)
ncalib	float(4)	정격 검증(nominal calibration)
ncalper	float(4)	정격 검증주기 (nominal calibration period)
dir	char(64)	디렉토리
dfile	char(32)	RSP(Response Spectrum) 파일명
rsptype	char(6)	응답 형식(response type)



##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정 2010. 7. 30. 기상청고시 제2010-2호  
일부개정 2013. 8. 12. 기상청고시 제201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해저에서 지진·화산 등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파(長波)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4.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6.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를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7.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관측기관이 운용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협의회에서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간 및 해수면 높이를 기본적으로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6조(관측기기)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자료 수집·처리장치) ① 자료 수집·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② 자료 수집·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 ③ 자료 수집·처리 장치의 성능·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자료전송·통신장비)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관측장비 및 그 부대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장비는 낙뢰로부터 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0-2호, 2010.7.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3-2호, 2013.8.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제6조 관련)

구분	항목	성능·규격	
해수면 관측기	설치 깊이	최대 6,000 m	
	관측범위	0 - 10,000 psi	
	해상도	1 mm 이내(수심 6,000 m에 설치 시)	
	자료취득간격 (내부기록, 이벤트 보고, 평시보고)	내부기록 : 15 초 이벤트보고 : 15 - 60 초 평시보고 : 15 분 ※ 평상시 15 분 간격 또는 그 이내로 운영, 이벤트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1 분 또는 15 초 간격 등으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	
	지진해일 발생 보고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5 분 이내 자동 보고	
	전원공급시스템	2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극초단파식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9.4 - 9.8 GHz
		빔 너비	5 - 10°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파고계	GPS식	관측범위	0 - 20 m
		해상도	1 mm
		정밀도	1 - 10 cm(주파수 범위가 1-1,000 s일 때)
		자료취득간격	0.5 초 또는 5 초
		전원공급시스템	1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별표 2]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의 성능·규격(제7조 제3항 관련)

구분	항목	성능 및 규격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메모리	자료저장 메모리는 10 GB 이상으로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 장애 시에도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함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12 bit 이상
	인터페이스	RS232C, RS422, RS485 포트, USB 포트 등 관측장비에 따라 호환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장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인터페이스 포함)
	자료저장간격	15초, 1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간격 등에 대해 선택 가능
	시간동기화	KST기준 1일 1회
	외장	외부에 설치 시 산화방지와 방수기능이 가능한 재질 및 보호케이스 사용

[별표 3]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자료구조(제7조 제4항 관련)

항 목	자료길이	단위	설 명	표현방식
파일명	20		'관측소코드, 첨부파일명, 연월일'순으로 표기	AAA_XXXXXXXXXXYYYYMMDD
관측소코드	3		사이트 코드	AAA
관측일시	19		'년월일시분초' 순으로 표기	YYYY-MM-DD-hh-mm-ss
관측모드	1		일반모드=0, 이벤트모드=1	0, 1
위도	9	°	관측장비 위치(위도)	00.000000
경도	10	°	관측장비 위치(경도)	000.000000
해수면 높이	8	m	압력식 해수면 관측기	0000.000
	7	cm	극초단파식 해수면 관측기	0000.00
파고	6	m	GPS식 파고계	00.000
진압 1	5	V	자료수신 부이 진압	000.0
진압 2	5	V	헤저 장비 진압	000.0
참조	3		참조값	000